

호주 비즈니스 가이드

An introductory guide

목차

목차	i
1 호주 소개	1
2 호주에 대한 외국인 투자	6
3 사업체의 구조	10
4 호주 증권거래소 (ASX)	15
5 사업비자 및 입국심사	19
6 법인세	22
7 Goods and Services Tax (GST)	27
8 개인소득세	30
9 고용법	33
10 지적재산권	39
11 소비자 보호법	42
12 독점규제 및 경쟁에 관한 법률	44
13 환경법	46
14 PwC 소개	49

호주 소개

호주의 면적과 인구

호주는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나라인데, 그 면적은 약 770만km²에 이릅니다. 호주는 가장 북쪽에서 가장 남쪽까지 길이가 약 3,700km에 이르고, 동서간의 길이는 약 4,000km에 이르는 큰 대륙입니다.

호주는 6개의 주(states)와 2개의 준주(territories)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호주의 정치적 수도인 캔버라를 포함
- New South Wales 시드니가 위치
- Northern Territory
- Queensland
- South Australia
- Tasmania
- Victoria; and
- Western Australia

2013년에 호주의 총인구는 2,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호주인의 생활 양식

호주는 세계에서 훌륭한 생활방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여성의 평균수명은 84.2세이고, 남성의 평균수명은 79.7세입니다. 저렴한 생활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주거시설, 폭넓은 의료혜택, 훌륭한 교육 및 사회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므로, 호주는 외국근로자 및 그 가족들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세계 주요도시에 대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호주의 주요 도시들은 훌륭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해 주는 도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¹

자원과 기후

호주는 산업화된 대륙인 동시에, 광물 및 농업자원이 풍부하고, 세계에서 훌륭한 기후를 가지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호주는 남반구에 위치해 있으므로, 여름은 12월부터 2월까지이고, 겨울은 6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북부지역의 경우 여름은 11월부터 3월까지 지속되는데, 비가 많이 오고 덥습니다. 그외 다른 지역의 경우 1월 평균기온은

섭씨 28도 정도이고, 건조한 날씨를 보입니다. 남부지역의 경우 7월 평균 기온이 16도 정도 됩니다.

다문화 지역 공동체

호주 대륙에는 원주민이 거주하고 있었고, 18세기 무렵 영국에서 형벌을 받은 사람들이 이주해 정착했는데, 현재의 호주는 한층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다문화 국가입니다. 호주에는 200개 이상의 다른 언어와 방언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원주민 언어가 50개 정도입니다. 호주는 약 2백여 국가 출신의 사람들에게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인종적 다양성과 관련해서는 국제적으로 훌륭한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호주는 지난 50년 동안 적극적인 이민 정책으로 조화로운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고, 2010년 6월 30일 현재 거주자 4명 중 1명은 해외에서 태어났습니다. 해외에서 출생한 사람 중 40%가 유럽에서, 33%가 아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²

확실성과 안전성

호주의 법제도는, 영국이나 다른 연방국가 및 일부 유럽국가의 법제도와 유사하게 보통법(common law)과 성문법이 합쳐져 있는 형태입니다. 호주에서 적용되는 보통법 전통은 사법부의 독립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법원의 판결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법원칙(prevaling law)의 맥락하에서 이루어집니다. 계약에 관한 당사자간의 약정은 법규와 독립성이 보장되는 법원에 의해서 보호됩니다.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그리고 개인은 법 앞에서 모두 평등합니다.

법률 제도

환율 통제가 실질적으로 폐지되었으며, 호주정부는 금융시장의 발전에 맞추어 법령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 호주정부는 시장을 통합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한편,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호주 회사법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바 있습니다.

호주중앙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은 은행법(the Banking Act 1959)의 외환규제관련 하위법령인 the Banking (Foreign Exchange) Regulations 1959의 적용을 여러 예외조항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배제하여 왔습니다. The Banking (Foreign Exchange) Regulations 1959를 적용받아야 하는 지 여부는 사례별로 각각 그 규정의 조건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적용 대상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¹ 2010 전세계 삶의 질 설문조사 - Mercer Human Resource Consulting 실시

² 호주 통계청

호주 경제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경쟁력이 있으며, 개방적 이고 유연한 경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9년을 기준으로 호주에서의 삶의 질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 그리고 영국 보다 삶의 질이 더 높아졌습니다.³

호주 경제는 평균적으로 1990년 이래 매년 약 3.3%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2 ~ 2013년 사이에 호주의 GDP (국내총생산)는 약 1조5250억 호주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호주 경제 성장의 힘은 낮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배가되어 왔습니다. 지난 15년에 걸쳐, 인플레이션율은 안정적이었는데, 매년 평균 2.5%를 기록했습니다.

호주의 실업률은 2013년 10월에 5.7%였습니다.

호주는 아태지역에서 일본, 중국, 한국 다음으로 큰 경제 국가이며 중국이 최대 교역국입니다.

호주의 시간대는 미국의 업무 마감 시간과 유럽의 업무 시작 시간과 가깝습니다.⁴

사업하기 좋은 지역

글로벌 기업에 따르면, 호주는 역동적인 아태지역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기업에게 지역 본부로서 최고의 비즈니스 사례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호주의 대표적인 비즈니스 중심지로는 시드니(NSW), 멜번(VIC), 브리즈번(QLD) 및 퍼스(WA)를 들 수 있습니다. 호주 비즈니스 센터의 사무공간 비용은 세계에서 14위로 높은 시드니의 주요 비즈니스 센터와 비교하여 낮은 편입니다.⁵ 호주의 통신비는 이 지역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다른 주요 경제권이나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및 인도의 법인세율과 비교해 볼 때, 호주 법인세율 30%는 매우 경쟁력이 있습니다.

호주는 아태지역을 선도하는 금융센터이며, 호주 증권거래소는 세계 10대 거래소에 해당되고 시가 총액이 1조5천억 호주달러에 이릅니다. 호주가 지역의 여러 시장과 제휴함으로써 기업인들에게 아태지역에서 종합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⁶

호주는 뛰어난 상업중심지역의 사무공간, 대규모 공장부지, 산업용지부터 수송기반시설과 낮은 비용의 공과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사업수요에 대해 실질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이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의 지배와 규제의 틀이 확립되어 있는 호주에는 강한 민주주의 전통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노동력

호주는 다중언어 능력을 갖추고, 고등교육을 받은 숙련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종합적인 교육시스템과 직업훈련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호주 근로인구의 50%가 대학졸업에 준하는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는 다양한 언어능력을 갖춘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호주 인구의 약 15%가 영어 외에 다른 언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⁷

호주의 교육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교육시스템 중의 하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주인구의 99%는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호주는 고등교육 및 컴퓨터 활용능력을 갖춘 노동력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³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⁴ Axiss Australia, 호주: 새로운 글로벌 금융 센터

⁵ DTZ - 전세계 사무실 점유 비용 설문조사 2011

⁶ World Stock Exchanges 및 www.asx.com.au

⁷ Axiss Australia, 호주: 새로운 글로벌 금융 센터

호주에 대한 외국인 투자

개요

호주정부는 자국내 지역사회의 이익에 부합하는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고 장려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호주정부의 심사절차는 투명하고 매우 개방적으로 진행 됩니다. 호주정부는 투자제안서가 미리 신고될 필요가 있거나 호주의 국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투자제안서의 진행을 중단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The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FIRB)는 법령에 근거한 기구는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합니다. 호주에 직접 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foreign interests)이 제출한 투자제안서를 검토하고, 그 투자제안서가 외국인투자에 관한 호주정부의 정책에 비추어 볼 때 승인이 가능한 지 여부 및 그 투자제안서가 *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Act 1975 (Cth)* (FATA)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정부에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정부의 외국인 투자정책에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고, 필요 시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호주투자 정책을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범위

외국인(foreign person)의 투자제안서는 외국인투자에 관한 호주의 법령과 정책을 적용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외국인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호주의 상시 거주자가 아닌 자연인, 즉 비거주자
- 호주 상시 거주자가 아닌 자연인 또는 외국 법인이 상당한 지분(substantial interest)을 보유한 법인
- 2인 이상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의 지분을 합산할 경우 그들이 지배력을 보유하게 되는 법인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상당한 지분(substantial interest)을 갖고 있는 부동산신탁의 경우 그 신탁의 수탁자(the trustee of a trust estate)
- 비거주자 자연인 또는 외국법인의 지분을 합산할 경우 그들이 상당한 지분(substantial interest)을 갖고 있는 부동산 신탁의 수탁자(the trustee of a trust estate)

상당한 외국인 지분의 기준

외국인 1인(그의 이해관계인 포함)이 회사 또는 신탁의 소유권이나 투표권의 15%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여러 명의 외국인(그의 이해관계인 포함)이 회사 또는 신탁의 소유권이나 투표권의 4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외국인이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사전 승인이 필요한 외국인 투자

FATA 또는 호주정부의 외국인투자정책의 적용을 받으면서, FIRB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투자제안서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호주 법인의 상당한 지분에 해당되는 기발행 주식이나 그 권리(옵션, 전환 사채, 주식 전환이 가능한 기타 증서)를 취득하고 그 가치가 248 백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다만 뉴질랜드와 미국 투자자는 상이한 면제 한도가 적용되는데 지정된 민감한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248 백만 달러, 여타의 경우에는 1,078 백만 달러가 적용됩니다⁸
- 호주 업체에 대한 지배권을 갖게 되는 자산을 취득하고 그 금액이 248 백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뉴질랜드와 미국 투자자에 대한 한도는 위에 언급된 주식 취득 한도와 동일합니다.
- 호주 자회사들 또는 총 자산이 248 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역외회사를 인수할 경우. 뉴질랜드와 미국 투자자의 경우에는 위에 언급된 1,078 백만 달러가 적용됩니다. 다만 지정된 민감한 사업 분야에 해당되는 역외 업체 취득의 경우 248 백만 달러 한도가 적용됩니다.
- 규모에 관계 없이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기관에 의한 직접 투자
- 아래에 해당되는 호주 부동산에 대한 권리 (임대, 파이낸싱, 이익 배분 협정을 통해 발생하는 권리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
 - 비거주용 상업용지로 개발된 부동산으로서 그 부동산이 유산(Heritage)목록에 등재되어 있고, 그 가치가 5백만 달러 이상이며, 그 취득자가 미국[또는 뉴질랜드] 투자자가 아닌 것
 - 비거주용 상업용지로 개발된 부동산으로서 그 부동산이 유산(Heritage)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가치가 54백만 달러(뉴질랜드 및 미국투자자의 경우에는 1,078 백만 달러)이상인 것
 - 나대지(그 가치는 불문)
 - 거주용 부동산(그 가치는 불문)
 - 호주 urban land corporations 또는 urban land 부동산신탁의 주식 또는 unit(그 가치는 불문)
 - 투자제안서가 신고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어떤 의문이 존재할 경우 그 제안서(주식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채권을 포함하는 자금모집 협약이 있는 경우 그 협약은 외국인 직접투자로 취급됨)

⁸ 인용된 수치는 매년 조정될 수 있으며, 2013.11.30일 현재 기준 자료임

민감한 산업 분야(Sensitive sectors)

지역사회의 이익과 국익에 배치될 소지가 있는 민감한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구체적 제한이 가해지는 민감한 산업분야는 주로 주거용 부동산, 은행업, 미디어, 정보통신, 선박, 민간항공, 공항 분야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는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의 경우 다른 정부부서나 이해관계인이 투자제안서 심사과정에 참여하고, 투자신청서의 평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호주와 미국의 자유무역협정(AUSFTA)

AUSFTA는 2005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되었고, 지금까지 호주가 추진해 온 양자경제 협정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호주로의 외국인투자자와 관련 하여 이 협정이 적용되는 미국투자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 미국 기업
- 미국에 있으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점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미국투자자의 경우 호주 투자를 위한 투자제안서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 투자자와는 달리 완화된 금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AUSFTA에 따라 미국투자자의 경우에는 호주정부의 특별한 가이드라인과 심사절차가 진행되는 민감한 산업 분야가 따로 정해져 있는데, 그러한 민감한 산업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디어
- 정보통신
- 운송(공항, 항만시설, 철도시설, 국내외항공, 선적서비스 포함)
- 호주 국방성에 제공되는 인적자원 혹은 기술, 군사장비물품
-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장비 또는 기술의 제조나 공급
- 암호화 및 보안 기술이나 정보통신시스템과 관련하여 개발, 제조 또는 공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을 추출,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 또는 핵시설의 운용

이러한 산업분야에서의 투자에 대하여는 FATA상 여타 분야와는 다른 금액기준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호주정부는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행위가 면제대상이 아닌 한, 해당 외국인은 반드시 FIRB에 투자제안서를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주거용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이란 상업용 및 농업용 부동산을 제외한 주거용 토지와 주택을 말합니다. 취득 시 통지를 해야 하는 주거용 부동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격 요건의 적용을 받음).

- 나대지 단일 블록(single blocks of vacant land)
- 신축 주택 (new dwellings)
- 기존 (중고) 주택 (established (second hand) dwellings)
- 기존 (중고) 주택의 재개발.

상업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에는 주거용 목적이 아닌 비어 있는 부동산 및 이미 개발된 부동산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실질적인 일차생산 활동에 완전히 배타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농촌 부동산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취득 시 통지를 해야 하는 상업용 부동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격 요건의 적용을 받음).

- 이미 개발된 상업용 부동산
- 나대지
- 관광 공동 주택
- 삼림

승인 절차

호주 재무장관은 외국인의 투자제안서가 호주정부의 외국인투자정책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민감한 이슈 (대부분은 부동산 투자와 관련됨)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FIRB에 부여하였습니다.

투자제안서가 제출되면 호주정부의 외국인투자정책과 FATA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됩니다. 대부분의 투자제안서는 승인이 이루어 지지만, 만일 그 투자제안서가 호주국익에 반하는 경우 재무 장관은 FATA에 따라 그 투자제안서를 금지하거나 승인에 일정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⁹

대부분의 경우 승인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결정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알리는 기간 10일은 별도)에 이루어집니다. FIRB는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추가로 9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⁹ FIRB 연례 보고서 2007-2008, p.7

국익 (The national interest)

호주의 국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대부분의 산업분야에서 소규모 투자제안서는 FATA를 적용 받지 않고, 호주정부의 외국인투자정책에 따른 신고가 면제됩니다. FIRB의 심사절차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대규모 투자제안서 또는 민감한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제안서가 호주국익에 반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 또는 다른 정부기관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집합니다.

FATA에서는 호주국익에 대하여 정의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호주정부는 자국내 여론 등을 참고하여 호주국익에 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제안서를 평가할 때 고려되는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안보
- 경쟁 상황
- 여타 정부 정책(과세 정책 포함)에 대한 영향
- 경제와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
- 투자자의 특성.¹⁰

정부는 부동산과 농업에 관한 특별 정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신청서가 접수된 후 FIRB에 의해서 진행되는 심사는 호주에서 행해질 외국인 투자자들의 사업 지분 취득 또는 부동산 매입 활동을 검토하기 위하여 진행되는데, 분명하고 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집니다.¹¹

승인 받은 후

정부의 외국투자정책에 근거한 승인은 일반적으로 특정 거래에 대해서만 거래가 적시에 완료될 것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부여됩니다.

만약,

- 승인을 받았을 때 승인된 거래가 진행되지 않거나
- 당사자들이 나중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 12 개월 이내에 거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FIRB로부터 해당 거래에 대해 추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제안의 성공을 위해 연장된 기간이 필요하고 제안 시기를 연장하는 것에 국익에 반하는 행위(예: 부동산 투기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등 해당 상황을 고려하여 승인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승인서에 연장 기간이 명시됩니다.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호주정부는 외국인의 호주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보조금(taxable grant) 및 조세감면(tax relief)에서부터 할인된 가격으로 사회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그 범위가 매우 다양합니다.

외국인의 호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부기구인 Austrade입니다.

Austrade

Austrade의 주된 임무는 호주 국민들이 수출과 국제 영업활동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의 호주에 대한 생산적인 투자를 촉진, 지원함으로써 호주의 국가 번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Austrade는 호주회사, 외국 바이어, 호주 밖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투자자에게 수출 및 투자와 관련된 서비스를 전달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부 기관입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모든 투자 관련 질문 및 지원의 초기 조정 작업
- 호주 기업 및 규제 환경에 관한 정보 제공
- 호주에서 사업체 설립을 위한 지원 및 소개 업무
- 시장 정보 및 투자 기회 제공
- 호주에서 적합한 투자 장소 및 파트너 모색 지원
- 호주 정부 프로그램과 승인 절차에 관한 조언 제공

¹⁰ FIRB 연례 보고서 2011-2012, p.7

¹¹ “호주의 외국인 투자 정책”, 2009년 9월 - 참조 <http://www.firb.gov.au>

사업체의 구조

사업활동 주체의 개요

호주에서의 사업활동 주체로는 개인사업자(a sole trader), 파트너십(partnership), 트러스트(a trust), 조인트벤처(a joint venture) 또는 회사(corporation)가 있습니다

호주 외의 다른 지역에서 법인으로 설립된 회사가 호주에서 사업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호주에 자회사(모기업은 자회사의 지분을 전부 소유할 수도 있고 일부만 소유할 수도 있음)인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실제로도 대부분의 외국회사는 호주 내의 완전소유 또는 부분 소유 자회사나 호주 지점을 통해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사 설립

외국회사가 호주에 자회사를 두는 방법으로는 2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규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인으로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영업활동에 착수하지 못한 법인(shelf company)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ASIC)를 통해 설립합니다. 호주에서 설립되는 회사에는 고유한 9자리 숫자로 구성되는 Australian Company Number (ACN)를 발급받게 됩니다.

호주 회사법(the Corporations Act 2001 (Cth))(이하 **회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회사 유형은 다음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unlimited with share capital(사원이 무한책임을 지는 회사)
- limited by shares(일반 주식회사)
- limited by guarantee(사원이 주식이 아닌 보증형태로 책임을 지는 회사로 주식 미발행)
- no liability(이 유형은 사업활동이 광업 또는 광업 관련 목적에 한정된 회사에만 적용될 수 있음)

호주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회사 형태는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다시 proprietary company와 public company로 구분되는데, public company만 호주 증권거래소(the Australian Stock Exchange Limited; **ASX**)에 상장될 수 있습니다.

비공개회사(Proprietary companies)

proprietary companies는 private venture 사업을 위하여 설립되거나 public companies의 자회사로 설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proprietary company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정한 기준에 따라 large proprietary company 와 small proprietary company 로 구분될 수 있음 (상세 내용은 아래 참조)
- 회사의 청산(wind-up)시 주주로서의 부담해야 할 책임은 자신의 지분에 대한 미납금으로 한정됨 (미납금이 있을 경우)
- 종업원이 아닌 주주의 수가 50 인 이하일 것

-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설명서 또는 다른 기업공개 문서의 제출을 통한 자금모집 활동은 호주에서 할 수 없음
- 적어도 한 명의 호주 거주자인 이사(director)를 보유해야 하지만, secretary 를 보유할 필요는 없음
- 만일 회사가 limited proprietary company 라면 그 회사명에 "Proprietary Limited" 또는 "Pty Limitd"를 사용하여야 함

호주에서 설립된 회사에게는 고유한 9자리 Australian Company Number (ACN)가 발급됩니다.

proprietary company가 다음 3가지 기준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large proprietary company로 간주 됩니다.

- 당해 회사와 그가 지배하는 회사(자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당해 회계연도 매출액이 2,500 만 달러 이상인 경우
- 당해 회사와 그가 지배하는 회사(자회사)의 연결재무 제표를 기준으로 회계연도 말 총자산이 1,250 만 달러 이상인 경우
- 당해 회사와 그가 지배하는 회사(자회사)가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의 수가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50 인 이상 인 경우

proprietary company가 위 3 가지 기준 중 2 가지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small proprietary company로 간주됩니다.

공개 회사 (Public companies)

Public company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로 대형 공개 벤처회사(public ventures)에 사용됨
- 주주의 수에 제한이 없음
- 적어도 3 명의 이사(director)를 두어야 하는데, 그 중 2 인 이상은 반드시 통상적으로 호주에 거주하는 (ordinarily reside) 사람이어야 함
- 통상적으로 호주에 거주하는 1 명의 company secretary 를 두어야 함
- 관련 법령에 따라 유가증권 모집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발행할 수 있음
- 호주 증권거래소(ASX)에 상장할 수 있음
- 회사가 limited public company 인 경우 회사명에 "Limited" 또는 "Ltd"를 사용하여야 함.

지점 (Australian branch)

외국회사가 본국에서 호주에서의 영업실적과 본국에서의 영업실적을 연결재무제표처럼 하나로 작성하고자 할 목적이 있다면, 호주지점을 설치하는 것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보다 더 선호될 수 있습니다. 만일 외국 회사가 호주에 지점을 설치하려는 경우 그 호주지점은 호주 회사법에 따라 외국회사(as a foreign company)로 등록해야 합니다.

호주지점을 설치하려는 외국 회사는 신청서와 함께 본국 법인 설립 증명서 및 그 밖의 첨부서류를 갖추어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ASIC)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 사무소를 호주에 설립하고 현지관리인(local agent)을 임명해야 합니다.

호주 지점은 그 등록과 동시에 Australian Registered Body Number(**ARB**N)을 부여 받습니다.

등록된 호주지점은 매년 외국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각종 보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s)

외국법인이 호주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할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법인의 호주 사무소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사무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직접적인 영업활동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업무(예: 관측활동)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무소가 관측활동 등의 사무소 업무를 넘어 직접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호주 지점(Australian branch)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상호 (Company and business names)

호주에서 등록된 상호(company and business names)의 공식적인 기록은 ASIC가 유지관리합니다.

상호를 정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그 상호가 Corporation Regulations 에 근거하여 예비 또는 등록된 상호나 전국 업체명 등기부에 포함된 상호와 구분되어야 함
- “misleading and deceptive conduct”, “misrepresentation”, “passing off”과 관련하여 호주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Cth) 상의 법원칙을 위반해서는 안됨.

호주 회사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회사는 Australian Business Number(ABN)를 받을 수 있는데, ABN은 the Goods and Services Tax (GST) 납부를 위한 사업자로 등록하는데 필요합니다(한국의 사업자등록번호임).

만일, 어떤 회사가 등록된 상호(registered company name)가 아닌 다른 상호를 이용하여 상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상호를 business name으로 따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Business name 등록은 그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State or Territory)의 주법(State or Territory legislation)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정관 (Constitution of a company)

회사의 행위는 그 행위에 관하여 책임과 권한을 맡고 있는 회사의 기관에 의해서 수행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책임과 권한은 호주 회사법의 이사와 주주에게 배분되어 있어 있습니다. 회사 업무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이사와 주주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는 그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게 됩니다.

회사의 정관은 주로 다음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 회사의 이름
- 주주나 director 의 책임
- 회사를 내부적으로 통제하는 규칙

법인 설립 절차

proprietary company 설립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Step 1: 호주 자회사를 설립하려는 외국법인은 먼저 그 자회사의 상호를 선택해야 하는데, 그 상호는 이용가능 하고 등록이 허용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Step 2: 호주 자회사를 설립하려는 외국법인은 설립 신청서를 작성해서 ASIC에 제출하는데, ASIC는 상호가 이용 가능한 경우에만 등록합니다.

신청서에는 자회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고 다음 사항도 기재해야 합니다.

- 호주 내 등록사무소 및 주된 영업장소
- 지분구조(share structure)
- 주주
- 호주 자회사의 director 또는 secretary 가 될 사람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 상세정보 기입).

적어도 director 1명은 호주 거주자이어야 하고 법인이 director 가 될 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일단 설립되고 나면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요구 사항을 잘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ABN 과 Tax file Number(TFN) 신청
- 회사 등기부를 최신 상태로 유지함. 이 등기부에는 회사 기록과 모든 이사회 및 주총 회의록도 보관해야 함. 또한 회사는 매년 부채지불능력에 관하여 ASIC 에 신고해야 함. 즉, 이사들은 부채의 지급기한이 도래할 경우 회사가 그 부채를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호주 회사법에 따라 신고해야 함.
- 매년 감사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제출 (대기업 또는 외국법인의 완전소유 업체에 해당됨). 지정 기간 내에 제출할 경우 ASIC 에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 수수료는 없음. 늦게 제출할 경우 late fee 부과.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ASIC에 신고 해야 합니다.

- 상호(company name)의 변경.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14 일 이내
- 등록사무소, 호주 내 주된 영업장소 등 회사 관련 세부사항의 변경.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28 일 이내
- 정관의 변경.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28 일 이내
- director 세부사항(이름, 주소, 신규 임명 또는 퇴임)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28 일 이내
- 지분구조(Share structure) 또는 주주 관련 세부사항의 변경.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28 일 이내

자본금 (Share capital)

proprietary company나 public company의 경우 그 회사의 형태가 주식회사(limited by shares)인 경우 주주 최소 인원은 1인입니다

회사에 의해서 발행되는 주식의 수에 관하여는 제한이 없습니다

회사 자본금의 처리와 관련 하여서는 호주 회사법에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회사 임원 (Company officeholders)

회사는 회사법에 따라 회사를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할 임원을 임명해야 합니다. 임원은 회사법에 규정된 법적 요건을 회사가 확실히 이행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Director는 일상적인 업무의 집행 책임을 지는데, public company는 최소 3인 이상의 director를 두어야 하고, proprietary company는 최소 1인 이상의 director를 두어야 합니다.

Public company의 경우 director 중 최소 2명 이상은 호주 거주자(Australian resident)이어야 하고, proprietary company는 director 중 최소 1인 이상이 호주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ordinarily reside in Australia) 사람 이어야 합니다.

회사의 secretary는 이사회에 대해 executive officer 역할 및 회사의 administrative officer 역할을 수행합니다. proprietary company는 secretary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public company는 최소 1명의 secretary를 두어야 하는데, secretary는 호주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ordinarily reside in Australia) 사람이어야 합니다.

호주에서 영업활동을 하거나 소득(property income)이 있는 모든 법인은 public officer를 두어야 합니다. public officer는 반드시 호주 거주자(a resident of Australia)로 임명되어야 하며, 호주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회사의 세무관련 책임을 잘 준수하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회사 임원이 "Australian resident" 요건을 갖추는 것과 관련하여 그 사람이 호주 시민권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Australian resident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여러 기준을 고려하고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 사무소 (Registered office)

호주에서 설립된 회사는 반드시 호주 내에 등록된 사무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등록사무소는 호주 내에 실제로 위치한 사무실이어야 하고, 그 세부주소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우편용 주소만으로는 회사가 등록사무소를 유지·관리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감사인과 재무 보고 (Auditors and financial reporting)

모든 public company는 법인 설립 후 1달 이내에 회계 감사인(auditor)을 지명해야 합니다.

아래 회사는 매년 회계감사를 받아 감사보고서를 작성·비치해야 합니다.

- 모든 public company
- 모든 large proprietary company
- 외국기업의 자회사인 small proprietary company

특정한 경우 ASIC는 아래 회사에 대하여 재무 보고서의 작성 및 감사 요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외국기업이 지분을 가진 large proprietary company
- 외국기업의 지배를 받는 small proprietary company

호주 회사법에 따르면, 감사인은 업무의 독립성, 공시, 재무보고에 관하여 여러 가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회사의 장부 (Books, accounts, registers and filing requirements)

호주 회사법은 회사로 하여금 그 회사의 회계와 업무상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고, 만일 company secretary가 임명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주로 이러한 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주 회사법은 그 회사의 장부가 공공기관에 의한 감사활동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서류를 수시로 ASIC에 제출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public company는 매년 사업보고서를 ASIC에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회사는 매년 ASIC로부터 company statement를 받아서 director나 secretary가 회사의 공적인 기록사항 (모든 임원의 성명과 주소, 등록 사무소, 주된 영업장소의 주소, 주주 및 지분구조에 관한 명세 포함)에 관한 세부사항의 변경 내역을 기록한 후에 ASIC에 통보해야 합니다.

호주 증권거래소 (ASX)

개요

호주에서의 주식거래는 ASX Limited라는 회사로 상장된 Australian Securities Exchange (이하 “ASX”로 약칭)에서 이루어집니다.

호주에는 비록 ASX와 같은 폭넓은 업무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몇몇 소규모 주식거래소도 존재 합니다. ASX는 6개의 독립적인 주식거래소가 합병되어 1987년에 만들어졌고 그 다음 해인 1998년 10월 13일 상장되었습니다. 2006년 7월 25일 ASX는 Sydney Futures Exchange (SFE)와 합병함으로써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거래소 중 세계에서 9번째로 큰 거래소가 되었습니다.

ASX는 공정하고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유가증권시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ASX는 모든 상장 회사들이 준수해야 하는 상장규정(Listing Rules)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ASX의 상장규정은 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장 (listing)
- 호가 (quotation)
- 시장정보 (market information)
- 보고 (reporting)
- 공시 (disclosure)
- 거래와 정산 (trading and settlement)
- 관리 (administration)
- 시장감시에 관한 사항 (general supervisory matters)
- 기타 상장회사의 준수사항 (various other aspects of a listed entity's conduct)

상장규정은 상장회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시장의 운영을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장규정은 회사법에 따라 상장회사와 그 관계회사에 대하여 법적 강제력이 있습니다.

상장승인 카테고리

ASX에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반드시 다음 3가지 카테고리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general admission*- 이 카테고리에 속하는 회사가 상장승인(admission)을 받기 위해서는 “자산 테스트(asset test)”나 “이익 테스트(profit test)” 둘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foreign exempt*- 이 카테고리에 속하는 회사가 상장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International Federation of Stock Exchange 의 회원인 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 *debt issuer*- 이 카테고리에서 회사가 상장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채무증권(debt securities) 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General admission

호주에서 등록된 회사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상장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관한 ASX의 기준을 모두 충족 시켜야 합니다.

- 이익/자산 테스트 (Profit/Asset Test)
- 주주의 분산 (shareholders spread)
- 사업설명서 (prospectus / information memorandum) 발행

업체의 공식 상장 승인 및 업체의 승인 카테고리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ASX의 재량권에 따릅니다.

Profit/asset test

ASX에 상장하려는 회사는 “Profit test”나 “Asset test” 둘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익 테스트(Profit test)”에 따라 상장승인을 받고자 하는 회사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최근 3 년의 사업연도 동안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세전) 연결이익의 합계가 1 백만 달러 이상일 것.
- 최근 12 개월 동안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세전) 연결이익의 합계가 40 만 달러 이상일 것. 이 경우 12 개월의 마지막 날은 회사가 상장승인을 신청한 날부터 역으로 계산하여 2 개월 이내여야 함.

“자산 테스트(Asset test)”에 따라 상장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당해 회사는(“투자 회사”는 제외, 아래 참조)는 상장승인 시점에 자금 조달 비용을 공제한 후 3 백만 달러 이상의 순자산(net tangible assets: 순자산금액에서 무형자산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가지고 있거나, 시가총액[사업설명서 (prospectus)에 기재된 공모가액(offer price)에 근거해서 산출]이 1 천만 달러 이상일 것, 그리고 다음 둘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당해 회사의 총 유형자산(total tangible assets, 자금모집 후 기준) 중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½ 미만일 것
 - 당해 회사의 총 유형자산(total tangible assets, 자금모집 후 기준) 중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½ 이상인 경우에는 그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½ 이상을 그의 영업목적에 따라 지출할 것을 약속할 것
- 당해 회사는 150 만 달러 이상의 운전자본(working capital)을 가지고 있을 것. 또는 운전자본이 150 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상장후 첫 사업연도 예상수익 (budgeted revenue)을 운전자본에 포함시킬 경우 그 합한 금액이 150 만 달러 이상일 것. 광업 탐사 업체 또는 오일/가스 탐사 업체의 경우 특별 요건이 적용됨.

“투자 회사”(사업체의 경영 또는 통제가 아닌 증권이나 선물 계약에 대한 투자를 주된 활동으로 하는 회사)의 경우 “Asset test”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 중 하나를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자금 조달 비용을 공제한 후 순 유형 자산(net tangible asset)이 1 천 5 백만 달러 이상일 것
- 풀형 개발 펀드(pooled development fund)로서 자금 조달 비용을 공제한 후 순 유형 자산이 2 백만 달러 이상일 것

주주의 분산

ASX는 일반적 절차에 따라 상장승인을 받으려는 회사의 경우 주주분산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합니다.

- 2 천달러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적어도 300 명 이상일 것이고 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회사 및 이사와 관련 없는 당사자들이 보유하고 있을 것.
- 주식의 50%~75%를 특수관계인(related parties)이 보유할 경우 회사의 주주 수는 적어도 350 명 이상일 것.
- 주식의 75% 이상을 특수관계인(related parties)이 보유할 경우 회사의 주주 수는 적어도 400 명 이상일 것.¹²

처분이 제한된 증권(restricted securities)은 ASX에 의해서 “escrow”제도가 적용되므로 일반적으로 주주 분산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요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 설명서 (Prospectus/information memorandum)

일반적으로 자금을 공모하려는 회사(ASX 상장 포함)는 사업설명서(prospectus)를 작성하여 ASIC에 제출하고 일반에 공개해야 합니다.

만일, 당해 회사가

- ASX 에 대한 상장신청과 동시에 자금을 모집할 필요가 없고,
- ASX 에 대한 상장 신청일부터 역으로 3 개월 이내에 자금을 모집한 적이 없으며,
- ASX 에 대한 상장 신청일부터 향후 3 개월 이내에 자금을 모집할 계획이 없으면

Prospectus 대신에 Information memorandum을 ASX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¹² 참조: asx.com.au/Listings

면제외국기업 (Foreign exempt entity)

상장규정의 Foreign Exempt Entity 조항에 따라, 저명한 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회사는 Foreign Exempt Entity 카테고리로 ASX에 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호주 투자자들로 하여금 더욱 광범위한 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 카테고리로 상장승인을 받기 위한 기준은 그 회사의 순 유형자산이 20억 달러(이하 호주 달러)이거나 최근 3년 동안 각 사업연도 영업이익이 2억 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카테고리에서 상장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회사는 ASX에 최근 연도 영업보고서(annual report)와 그 후의 중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장 승인을 받은 후에도 해당 회사는 ASX에 연간 영업보고서를 계속 제출해야 합니다. 이 카테고리로 상장된 회사는 ASX에 지속적으로 공시해야 할 의무와 상장 규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주기별로 이행해야 할 법인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상당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 업체가 ASX 상장 이전에 원래 상장되어 있던 국가의 유사한 요건의 적용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ASX는 법적 권리 이전 및 거래 정산을 촉진하기 위해 전자식 하위 등록 시스템인 "CHESS"를 사용합니다. 자국 법률이 CHESS를 사용한 법적 권리 이전을 인정하지 않는 외국기업의 경우, 예탁 시스템(depository system)이 사용되고 호주에 있는 증권 보유자에게 Chess Depository Interest (CDI)가 발급됩니다.

추가 정보

자세한 내용은 당사 웹사이트에 있는 "호주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 간행물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pwc.com.au/legal/publications/index.htm>

사업비자 및 입국심사

호주를 방문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비자 카테고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입국 프로그램은 기업인과 고급 기술자들이 호주에 영구 또는 임시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며 비자 요건도 다양합니다.

사업목적의 방문자

사업 목적으로 호주에 입국하고자 하는 기업가는 모국의 여권에 따라 Electronic Travel Authority (ETA, 일종의 전자 비자) 또는 eVisitor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가 부여될 경우 Business ETA 또는 Business eVisitor 비자 보유자는 호주 입국 시마다 최대 3개월을 체류하도록 허용됩니다. Business ETA 및 eVisitor 비자 보유자는 호주에서 비즈니스 활동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 비즈니스 회의나 총회(보상이 없어야 함), 계약 체결 또는 계약 협상 마무리, 일반적인 고용 관련 질의 또는 비즈니스 탐사 목적의 방문.

ETA 또는 eVisitor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적격 여권을 보유하지 않는 사람은 Business Visitor Stream에 근거하여 Subclass 600 Visa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온라인 또는 서류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Australian High Commission 또는 해당 국가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대사관에서 처리합니다.

단기간 (6주 이하) 동안 고급 특수 업무를 수행하려는 업무 목적을 가진 방문자가 호주에 입국하려면 subclass 400 비자가 필요합니다.

Subclass 400 비자 - 단기 취업 비자

subclass 400 비자는 2013년 3월에 도입되었고 단기 취업 목적으로 호주에 입국하려는 방문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를 받으려면 해당 작업이 고급 특수 직종이어야 하고, 해당자는 호주 업체가 현지 노동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기술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 비자는 최대 6주(제한적인 경우 최대 3개월) 동안 고급 특수직 정의와 성격상 지속성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는 취업을 허용하기 위해 부여됩니다.

호주로 오는 임직원 Sponsoring

호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 또는 호주에 회사를 설립하려는 외국 회사는 호주에 입국하려는 개인에게 Subclass 457 임시 취업 (Skilled) 비자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를 후원 받는 개인은 회사법에 규정된 회사 또는 관계 회사에서 최대 4년 동안 특정 직위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Subclass 457 비자 보유자에 대한 후원자(Sponsor)는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적극적으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합법적 업체임을 입증해야 함
- 후원 대상 종업원의 직접적 사용자임을 입증해야 함 (관계사로 구성된 그룹인 경우 후원자가 후원 대상 종업원의 직접적 사용자와 특수관계인인 경우도

가능함(related or associated to the direct employer of the sponsored employee))

- 후원자나 그 이사 또는 관계 업체와 관련된 불리한 정보(예: 이민, 차별, 산업적 관계, OH&S, 과세)가 없어야 하며, 불리한 정보가 있을 경우 합리적으로 불식시켜야 함
- 현지 노동력을 고용한 기록 또는 그에 대한 노력, 그리고 비차별적 고용 관행에 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함
- 후원자가 호주 업체인 경우 해당 교육훈련 벤치마크 기준(training benchmark criteria)을 충족함을 입증해야 함. 호주 업체로서 12 개월 미만 동안 사업을 수행한 경우 이 교육훈련 벤치마크를 충족하기 위해 감사 가능한 계획(auditable plan)을 제출해야 함.
- 457 비자 보유자에게 지급할 급여가 457 비자 프로그램 최저 요건은 물론 호주의 해당 직업에 대한 시장 임금(market rate salary)도 충족한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함
- 해당 시, 해당 직위와 관련하여 Labour Market Testing(노동 시장 테스트)을 실시하였고 Labour Market Testing 결과 호주 현지 노동 시장에는 적합하고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유자격 후보자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함.

호주에 공식적 영업 기지나 대리인(operating base or representation)이 없는 해외 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도 종업원이 Subclass 457 비자를 받도록 후원할 수 있지만, 해당 비자 보유자가 다음 사항을 수행하도록 지명해야 합니다.

- 호주에 후원 업체의 지사 설립 또는 합작투자회사, 대리점, 유통사 또는 자회사 수립 등 기타 사업 활동 수행
- 호주에서 후원 업체를 대리하여 계약 의무를 이행하거나 기타 사업 활동 수행. 이 경우 제삼자 계약서 사본이 필요함.

또한 457 비자 신청자는 건강, 특성, 영어 요건 등 개인 비자 부여에 필요한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일부 신청자의 경우 신청 절차의 일부로서 공식적인 영어 테스트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호주에서 영업을 수행하는 회사는 해당 직위가 정규적이고 고급 기술이 필요한 직위인 경우 직원의 영주권 취득을 후원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및 투자자(Business innovators and investors)

Business Skills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사업가는 후원자의 도움 없이도 자신의 사업체 시작, 신규 또는 기존 업체의 경영 또는 호주에 대한 투자를 위해 호주 입국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기준과 사업 배경 및 자산에 대한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Immigration Department(이민국)는 2012년 7월에 호주의 사업 기술 비자(Business Skills visa) 프로그램을 개정하여 13 개의 비자 subclass를 세 개로 통합하였습니다.

Subclass 188 - 이 임시 비자 subclass에는 다음 세 가지 종류(stream)가 포함됩니다.

- Business Innovator(사업 비자) - 이는 개인적 특성(예: 연령, 사업체 매출액, 사업체 자산 규모, 개인 자산, 고용 경험, 영어 능력 등)을 기준으로 부여되는 포인트로 판단합니다. 신청자는 55 세 이하여야 합니다.
- Business Investment (사업 투자 비자) - 이는 위에 설명한 개인적 특성을 기준으로 부여되는 포인트로 판단하며, 신청자는 55 세 이하여야 합니다.
- Significant Investor (주요 투자자 비자) - 이 비자는 포인트 요건이 없으며, 자신의 해외 사업체 관리를 위해 연중 상당 부분을 호주 밖에서 머무르고자 하는 다수의 해외 사업가들에게 적합한 비자입니다. 적격 요건으로는 신청인이 호주 내 적격 투자처에 5 백만 호주 달러를 투자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 투자는 최소한 4 년 동안 유지해야 하며, 이 비자 종류에는 55 세 나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Subclass 888 - subclass 188 비자 보유자가 최소 지정 기간 등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나면 subclass 888 permanent residence visa(영주권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Subclass 132 - Business Talent visa (사업 특기자 비자) - 이 비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Significant business history (상당한 사업 이력 보유) - 신청인이 연간 3 백만 달러 이상의 매출액이 발생한 사업체를 소유하여 상당한 사업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55 세 이하여야 합니다.
- Venture Capital (벤처 캐피탈) - 이 비자 신청인은 Australian Venture Capital Association로부터 1 백만 달러 이상의 투자액을 유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임시 비자로 호주에 입국하게 됩니다. 최소 지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영구 Business Skills 비자를 신청할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기존 임시 비자의 모든 의무와 영구 비자의 추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일부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비즈니스 및 투자 기준을 경감함으로써 사업목적 신청인을 지원하기 위해 주 정부의 sponsorship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업가가 General Skilled(일반 숙련직) 비자 카테고리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경우 호주로 입국할 수 있는 다른 기회도 있으며, 이를 위해 신청인의 다음 사항을 검토합니다.

- 연령
- 영어 능력
- 직업
- 자격
- 근무 경력 (호주에서의 경험 포함)
- 해당 시 호주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호주 거주 적격 뉴질랜드 사람과의 친척 관계

또한 신청자가 자신의 실제 직장이 있는 특정 주 또는 농촌 지역에 들어간다는 신청을 할 경우, General Skilled 비자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요건을 충족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주(States and Territories)에서 신청자에게 추가적인 sponsorship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숙련직 영구 이주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장소의 수는 매년 Immigration Department에서 정합니다. 현행 2013-2014 skilled migration program 수용 장소의 수는 128,550 곳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General skilled migration

programs(일반 숙련직 이주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제출되는 신청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되며 그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State and Territory) 정부가 지명한 신청자; 호주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적격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친척이 지명한 신청자; 심각한 부족 현상이 있는 직업을 지정한 신청자.

Subclass 457 비자 프로그램의 변경

호주 사업체와 사용자의 요구를 효율적으로 충족하기 위해 subclass 457 비자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2013년 7월에 대폭 변경한 이후로, 호주 정부는 2014년에 이 프로그램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그 보고서는 중반기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임시 거주자를 sponsor하는 모든 사업체는 다수의 법률 집행 의무와 관련된 준법 여부에 대하여 감사관으로부터 모니터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주의해야 할 지속적 의무 중 하나는 Subclass 457 비자 해당 종업원이 동일 직장에서 유사 직무를 수행하는 호주인에게 적용되는 조건(예: 시장 통상 임금 지급)보다 불리한 조건을 적용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해당 프로그램의 사용 금지, 위반의 통지, 법원의 민사 벌금 부과 등 행정적 제재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457 비자 프로그램이 자주 변경되고 2014년 7월 1일부터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비자를 이용하는 사업체들은 sponsorship, 지명 및 457 비자 신청 요건의 최신 변경 내용 그리고 sponsorship 의무 및 준법 제도와 관련된 변경 사항을 계속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기타 이슈

영주권자는 부동산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지만 임시 거주자의 자산 구입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호주에 입국한 직원을 sponsor하는 사용자도 퇴직연금 부과(Superannuation Guarantee Charge) 면제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세무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이민법 전반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사용자는 고용하는 종업원이 올바른 승인을 받도록 유념해야 합니다.

법인세

법인세 이슈

아래에서는 호주에서 사업하는 외국 업체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호주가 참여하는 국제 이중과세방지협약 대상 국가의 세금 관련 이슈를 간단히 설명합니다.

직접세

소득세 (Income tax)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소득세 목적상 호주의 거주자 (resident)로 간주됩니다.

- 호주에서 설립된 법인
- 호주에서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호주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 핵심적 경영 및 통제를 호주에서 수행하고 있음
 - 의결권이 호주 거주자인 주주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경우

호주 회사는 전세계에서 발생한 세무상 소득에 대하여 30%의 일반법인세율로 호주의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본이득세 (Capital gains tax)

호주 거주자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적 자산(Capital assets)의 경우 그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서 발생한 자본 이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비거주자인 외국법인(non-resident shareholder)이 호주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 다음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자본이득세가 면제됩니다 - 즉 해당 주식이 자본 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호주 자회사가 과세대상 호주 자산(Taxable Australian Property)이 아닌 경우 (즉 호주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시장 가치가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자산의 시장가치를 초과 하지 않는 경우). 일부 제한적 예외의 대상(예: 2백5십만 달러 미만의 주거용 부동산)이 있지만, 2016년 7월 1일부터 구입자는 Taxable Australian Property 처분 매출액의 10%를 원천징수하여 호주 국세청에 송금해야 할 의무가 있고, 공급자는 최종 산출 세금을 초과하는 원천징수 금액을 환급 받기 위해 세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호주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금

호주 자회사가 법인세를 납부한 배당금(franded dividends, 즉 호주 법인세를 납부한 이익에서 파생된 배당금)을 외국 모기업에 지급할 경우에는 배당금 원천징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금액(unfranded dividends)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30% 원천 징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원천징수세율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차입 (Debt funding of an Australian company)

호주법인이 비거주 외국 대출 업체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10%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세가 부과 됩니다 단, 그 이자를 받는 자가 호주 내에 고정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호주 내의 고정 사업장과 유효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를 호주사업자의 세무상 소득으로 귀속시켜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원천징수의무 없음).

2001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부채와 자본의 분류 기준(debt and equity classification rules)에 따른 경우 이자의 지급이 배당의 지급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식 배당의 지급이 이자의 지급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배당금은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법률에 따라 “Thin capitalization” rule을 적용하여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이자금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채가 순자산(부채 제외)의 75% 초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014년 7월 1일 이후의 소득에 대해서는 60% 비율이 적용됩니다.

외국인에 지급하는 로열티 (Royalties payable to a foreign company)

호주법인이 외국 거주자(법인포함)에게 로열티를 지급 하는 경우 그 로열티에 대하여는 30%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라면 감액될 수 있음)되고, 이전가격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전 가격 (Transfer pricing)

호주의 이전가격 규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표한 정상가격 개념(the arm's length concept)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전 가격 규정(transfer pricing rules)은 기업, 지사, 파트너십, 트러스트에 적용됩니다. 호주 국세청(ATO)은 이전 가격을 주요 이슈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호주의 다국적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국제 거래 규모 총액이 2백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해당 거래의 성격과 수량을 세무 신고서의 국제거래 명세표(International Dealings Schedule (IDS))를 통해 ATO에 보고해야 합니다. IDS를 통해 공개한 자료는 ATO가 이전 가격 검토 및 감사 대상 권을 선택할 때 사용합니다.

IDS를 통해 납세자는 이전가격 서류의 적용 대상인 특수관계인 거래(related party transactions)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전가격 서류의 제출이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그 자료를 준비하면 ATO가 이전 가격을 조정을 수행하고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 발생하는 벌금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벌금 경감 자격을 얻으려면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법률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이전 가격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룹 과세 (Group taxation)

연결납세제도는 법인소득세와 자본이득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호주법인이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호주회사, 호주 partnership 그리고 호주 trust를 하나의 과세집단으로 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또한, 외국법인이 여러 호주자회사의 지분을 모두 100% 소유 하고 있고 비거주인 모기업과 호주 거주인 자회사 간에 통합 호주 지주회사(no common Australian head company)가 없는 경우에도 연결납세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결납세제도를 선택한 그룹에는 100% 지분 소유 업체가 모두 포함되어야 하고 이 선택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룹 회사들간의 내부거래는 법인소득 세법상 무시됩니다.

조세 지원(Tax incentives)

호주대내투자(Inward investment)

투자프로젝트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기는 하지만, 호주 정부는 수시로 필요에 따라 제한된 기간 동안 급여세(Payroll tax), 인지세(Stamp tax) 및 토지세(Land tax)에 대해서 환급해 주기도 합니다

자본투자(Capital investment)

자본투자에 대한 지원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적으로 2013년 5월 14일 이후에 석유 및 기타 광물 탐사를 위해 지출한 자본적 지출은 15년 또는 자산 내용연수 중에서 짧은 기간 동안 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채굴권 약정(farm-in/farm-out arrangements)과 같은 자본적 지출 및 정부로부터 직접 취득한 채광권 비용은 직접 공제가 가능합니다.
- 2011년 7월 1일부터 R&D Tax incentive 가 R&D Tax Concession 를 대체하였으며 적격 R&D 활동에 대하여 보다 폭넓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R&D 활동을 수행하는 업체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2천만 달러 미만이면 45%의 세액 공제(환급 가능, 비용 공제의 150%에 해당)을 받을 수 있고, 또는 연간 매출액이 2천만 달러 이상인 업체는 40%의 세액 공제(환급 불가능, 비용 공제의 133%에 해당)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는 미사용 공제액을 향후 소득 연도로 이월할 수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회사의 회계 연도말로부터 10개월 이내에 매년 등록을 해야 합니다.
- 또한 호주와 이중과세방지 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의 거주인인 외국회사의 R&D 활동에 대하여 호주 정부가 시행하는 R&D Tax Incentive 수혜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발생하는 지적재산은 호주 외부에서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단, 호주에 있는 업체와 동일한 다국적 그룹이 보유함을 전제로 함). 또한 특정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활동의 50% 이상을 호주에서 수행할 경우, 회사는 호주 밖에서 수행한 활동에 대해서도 혜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다양한 자격 한도 요건이 있으므로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 아래에 해당되는 외국 연금 펀드(Non-resident pension fund)
 - 본국에서 면세되는 펀드
 -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또는 기타 지정 국가의 거주자
 - 호주의 특정 등록 요건을 충족

해당 펀드를 특정 호주 venture capital equity에 투자하여 그 지분을 12개월 이상 보유한 후 처분할 경우에는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2002년 7월 1일부터는 이 면제 조항이 다른 특정 면세 외국인 투자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초기 단계 벤처캐피탈 파트너십 (Early Stage Venture Capital Limited Partnership, ESVCLP)

ESVCLP 프로그램은 등록 및 투자 기준을 충족하는 펀드에 폭넓은 세제 혜택을 허용함으로써 초기 단계에 있는 호주의 벤처 캐피탈 부분의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SVCLP 프로그램은 기존의 Pooled Development Funds (PDF, 2007년 1월 1일부터 신규 등록 불가)를 대체하였습니다.

ESVCLP는 venture capital fund로서 법적으로는 limited partnership으로 설립되어야 하고, *Venture Capital Act 2002* (Cth)에 따라 Innovation Australia에 등록해야 합니다. ESVCLP는 tax flow-through 형태의 투자기구이므로 ESVCLP는 partnership 차원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ESVCLP에 대한 투자 결과로써 얻는 소득 및 자본 이득에 대해서는 호주에서 partner에게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ESVCLP의 결손금은 flow-through되지 않고 partner는 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SVCLP는 투자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반드시 투자 계획과 partnership 약관에 대하여 Innovation Australia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SVCLP의 재무구조나 투자할 수 있는 회사의 특성에 제한을 가하는 많은 법적 규정 이 있습니다.

그 중 중요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ESVCLP 는 자산가치가 5,000 만 달러를 초과하는 회사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 ESVCLP 는 그가 투자한 회사의 자산가치가 2억 5,000 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 ESVCLP 는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적격 활동을 영위하는 회사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부적격 활동의 예를 들면 부동산 개발업, 토지소유업, 은행업, 자본대여업, 리스업, 팩토리업무, 증권업, 보험업, 사회기반시설 및 관련시설의 건설이나 인수 업무 그리고 이자, 렌트, 배당, 로열티 또는 리스로 수입 활동 등이 있습니다.
- ESVCLP 펀드의 규모는 1천만 달러 이상 1억달러 이하 이어야 합니다.
- ESVCLP 에 대한 Partner 1 인의 지분이 전체 약정 자본금의 30%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ESVCLP는 Innovation Australia에 분기보고서 및 연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unit trust의 지분 및 해당 회사/unit trust 그룹의 동일한 완전 소유 그룹의 관계사나 기타 계열사 지분에 대하여 Partnership이 투자할 수 있는 총액은 약정 자본금의 3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규정에는 예외 사항이 있는데 예를 들면 퇴직연금 펀드, 공인 예금수취 기관 및 생명보험 회사 등이 있습니다.

역외 은행업무 단위 (Offshore banking units)

호주에 있는 공인 역외 은행업무 단위(authorised offshore banking unit)에 의한 순수 역외 은행 거래로 발생하는 과세 소득에는 1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투자 공제 (Investment allowance)

기업 납세자가 주된 사업 수행 목적으로 사용할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하거나 기존 감가상각 자산을 개선할 경우 투자 공제를 통해 상당한 일회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2백만 달러 미만인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자산 가액의 50%를 소득 공제(tax deduction) 받을 수 있으며, 이는 2008년 12월 13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사이에 자산에 투자를 실행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산을 최초로 사용하거나 사용을 위해 설치를 마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자산 투자액이 1천 달러를 초과할 경우에 소규모 사업체가 이 소득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2백만 달러 이상인 기타 사업체의 경우 자산 가액의 30%를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이는 2008년 12월 13일부터 2009년 6월 30일 사이에 자산에 투자를 실행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산을 최초로 사용하거나 사용을 위해 설치를 마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2010년 7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사이에 자산을 취득하여 최초로 사용하거나 사용을 위해 설치를 마치는 경우에는 추가로 10%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가 2008년 12월 13일부터 2009년 6월 30일 사이에 자산에 투자하여 2010년 6월 30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사이에 최초로 사용하거나 사용을 위해 설치를 마칠 경우 추가로 10%의 소득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2백만 달러 이상인 업체가 30% 또는 10% 소득공제를 청구하려면 최소 지출 한도 1만 달러가 적용됩니다.

이 투자 공제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 자산 자본 공제를 청구하는 소득세 신고서를 통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접세

인지세 (Stamp duty)

호주의 여러 주(States and Territories)에서는 여러 거래에 대하여 다양한 세율로 stamp duty를 부과합니다. 해당 거래에는 모기지(mortgages), 증권(securities), 보험증권(insurance policies), 장외 주식거래(non-marketable share transfers), 리스 서류, 자산, 사업 및 부동산 양도 계약 등이 포함됩니다. 특정 주에서는 위 거래에 대하여 인지세를 면제합니다.

토지세 (Land tax)

호주의 주 정부(State of Australia 및 Australian Capital Territory)는 건물 등이 없는 나대지 가치(unimproved value)를 기준으로 토지세를 부과합니다 (세금은 토지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해당자의 주된 거주지는 제외됨). 토지세는 호주 전역에서 다양한 세율이 적용되는데, 통상적으로 세율은 토지의 가치가 높을수록 올라갑니다. 일반적으로 토지 세금은 매년 특정 일자(New South Wales의 경우 12월 31일 자정)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부과됩니다.

급여세 (Payroll tax)

급여세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 고용주에게 부과합니다. 또한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급여세는 주별로 부과하는 세금(state based tax)입니다. 급여세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대부분의 주에서 일치하지만, 급여세 세율을 주마다 다릅니다. 사용자의 전국 급여액이 각 주에서 합의한 면세 한도를 초과할 경우 급여세는 4.75% ~ 6.85% 사이에서 단일 세율로 부과됩니다. 이 한도액 범위는 75만 달러에서 175만 달러 사이입니다.

이 한도는 그룹 사용자('grouped' employers)에 공동으로 적용됩니다. '그룹 사용자'에는 궁극적으로 동일한 업체(호주 또는 해외 업체)의 통제를 회사들이 포함됩니다. 이 정의는 종업원, 재무 지원 기능 심지어 사업장 구내를 공유하는 사용자들을 포함시키기 위해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급여세는 국내 소득인지, 국외소득인지 불문하고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일부 주(현재 NSW와 Tasmania)에서는 해당 주에서 사용자의 전체 종업원 수가 증가할 경우 급여세 리베이트 형식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현재 리베이트는 신규 종업원당 최고 5,000 달러가 될 수 있습니다.

관세 (Customs duty)

관세는 재화(goods)의 과세가격(customs value)을 기준(외국 수출항구 기준 FOB가격)으로 부과됩니다 (즉 대부분의 경우에 해외 내륙 운송료가 포함됨). 과세가격 (customs value)은 호주 세법에 따라 결정되므로 그 재화의 판매 가격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는 국내 소비를 위해 재화를 통관할 때 납부합니다. 이 시점은 재화가 국경을 통과하는 날짜 또는 보세 창고에서 반출하는 날짜가 될 수 있습니다.

Customs Act 1901 (관세법)은 호주로의 재화 수입 및 수출에 적용됩니다. 관세법 Part VIII에서는 재화에 부과되는 관세의 납부 및 계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 납부액을 평가할 때 고려하는 요소로는 원산지 국가, 재화의 관세품목 분류 및 그 가치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재화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5%입니다 (자동차 및 부품 포함). 식물, 의류 및 신발의 경우 일반적 관세율은 10%입니다. 수입 재화에 부과되는 관세 금액은 다양한 관세 양허 명령(Tariff Concession Orders, TCO), 조례, 또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하여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들 양허 규정은 재화의 성격과 원산지, 재화 수입 목적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적용됩니다.

수입업자는 기존 TCO가 재화의 면세 수입을 허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TCO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호주의 통상적 사업 활동 과정에서 대체 재화가 생산되지 않는다면 수입업자는 새로운 TCO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AusIndustry는 Enhanced Projects By-law Scheme (EPBS, 특정 산업 관세면제 제도) (Item 44 of the By-Laws)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적격 분야의) 자본 지출 프로젝트 용도로 재화를 면세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며, 자본 지출액이 1천만 달러를 초과하고 특정 기준을 충족함을 전제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원 및 제조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자주 활용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세금을 감면 받으려면 신청인은 조달 과정에서 해당 프로젝트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 공급에 관하여 호주 기업들에게 완전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최근의 Australian Jobs Act 2013(2013년 12월 27일에 시행) 법은 EPBS를 일부 변경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신청 절차에 대한 지침의 변경, 20억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적 준법 요건(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 도입 등이 있습니다. 또한 Australian Jobs Act 2013법은 프로젝트 제안자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하여 EPBS를 활용하려는 의사와 관계 없이 5억 달러 이상의 호주에 대한 주요 자본 지출 프로젝트에 대하여 새로운 요건을 부과합니다.

호주는 현재 몇 가지 FTA를 마련하였고 일부는 협상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호주 정부가 2013년 12월 초에 대한민국과 FTA 협상을 완료하여 조만간 호주-대한민국 간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근에 체결한 여타 FTA로는 말레이시아-호주 FTA (2013년 1월 1일에 발효), ASEAN - 호주- 뉴질랜드 FTA (AANZFTA) (2010년 1월 1일에 발효) 등이 있습니다.

AANZFTA는 포괄적 FTA로서 회원국들 간에 재화와 서비스 교역, 투자, 지적재산, 전자상거래, 기업가의 임시 이동 및 경제 협력 등 경제 활동의 모든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재화와 서비스 교역 및 모든 형태의 투자 장벽을 점진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동남아시아와 거래하는 호주 기업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기존 FTA와 협상 중인 TFA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호주 외교통상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호주의 기존 FTA 협정:

- ASEAN-호주-뉴질랜드 FTA
- 싱가포르-호주 FTA
- 태국-호주 FTA
- 호주-미국 FTA
- 호주-뉴질랜드 경제강화 협정(Australia-New Zealand Closer Economic Relations)
- 호주-칠레 FTA
- 호주-말레이시아 FTA

협정을 체결하였지만 아직

발효되지 않은 FTA:

- 한국-호주 FTA

협상 중인 FTA:

- 호주-중국 FTA
- 호주-걸프 지역 경제협력 위원회 FTA
- 호주-인도간 포괄적 경제 협력 협정
- 호주-일본 FTA 협상
- 인도네시아-호주간 포괄적 경제 제휴 협약
-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태평양 협약(Pacific Agreement on Closer Economic Relations)
- 포괄적 지역 경제 제휴 협약(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환태평양 제휴 협약(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수입업체는 재화 수입에 관한 행정 절차 외에도 해당 세관 준법 요건을 충족하는 데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2014년 2월 1일부터 발효되는 *Customs Amendment (Infringement Notices) Regulation 2013*에 근거하여 도입되는 벌금 인상에 유의).

호주 관세 및 국경 보호국 (Australian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ervice)은 관세 평가 목적상 이전 가격 조정의 처리에 대한 관심을 강화해왔습니다. 2013년 4월 Australian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ervice는 이전가격 협정이 수입 재화의 과세가격(customs value)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시행 성명서(Practice Statement)를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당사국들로부터 호주로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은 자사의 이전가격 조정이 관세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검토하여 관세의 과소 / 과다 납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조정의 최종적 영향에 관계 없이, 관련 외국 공급사로부터 재화를 수입하는 업체들은 Australian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ervice로부터 평가에 관한 조언을 받아서 수입 재화에 적절한 과세가격 평가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Australian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ervice는 화물 보고 특히 조립 주문 (assembly order, 즉 다수 공급자의 탁송품으로 구성된 선적)과 관련된 법적, 정책적 요건을 확실히 충족하도록 하기 위해 준법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관세 법규에 근거하여 통합 선적 내에서 각 위탁자/수탁자 조합에 대하여 별도의 화물 신고서(cargo report)를 발급해야 합니다. 글로벌 공급 체인 네트워크의 일부로서 역의 통합 허브를 활용하는 수입업체의 경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Goods and
Services Tax
(GST)*

GST 개요

호주에서는 2000년 7월 1일부터 Goods and Services Tax(이하 “GST”로 약칭)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채택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모델(VAT model)을 참고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호주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재화(goods), 용역 (Services), 권리(rights), 부동산(property)의 과세 공급(수입 포함)에 대하여 10%의 GST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호주 밖에서 소비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는 GST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12년 7월 1일부터 호주는 GST에 대하여 자기부과 과세제도(self-assessment system)로 전환하였습니다. Self-assessment system 하에서는 납세자가 GST 신고서나 수입 신고서를 제출해야만 해당 GST 세액과 공제액이 확정됩니다.

GST 관련 요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업체가 사업을 수행하고 GST 매출액이 연간 GST 등록 매출액 한도 이상일 경우 해당 업체는 GST 등록을 해야 합니다. 현재 한도는 현재 75,000 달러(비영리 업체의 경우 150,000 달러)입니다.
- GST는 등록 사업자가 공급하는 대부분의 재화, 서비스 또는 무형 품목에 대하여 10%의 세금을 부과하며, 단 공급이 면세 대상(input taxed), 영세율(GST-free) 대상 또는 범위 밖(outside the scope)인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공급자는 모든 GST를 납부할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급자는 계약 가격의 일부로서 공급품 수령자로부터 GST를 돌려받습니다.
- 재화 수입 시에 특정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만 과세대상 수입 가치(VoTI)에 대하여 10% 세율의 GST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VoTI에는 재화의 과세가격(customs value), 관세, 호주로의 재화 운송비 및 재화 운송 보험료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이 과세가격에 이미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수입업체가 deferred GST scheme (GST 세금 이연 제도)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Australian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ervice는 수입 시에 재화 수입업체로부터 GST를 징수합니다.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수입업체의 차기 월간 GST 신고서를 통해 해당 GST 세금을 호주 국세청에 송금하면 됩니다).
- 일부 서비스 수입도 “reverse charge”(매입자 납부 방식) 규칙에 따라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등록된 사업체는 사업 수행을 위해 취득한 물품에 지급한 GST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input tax credit)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소급 청구 기한은 4년입니다. 면세 대상(input-taxed) 공급품 제작과 관련된 취득 또는 개인적 소비를 위해 취득 또는 수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GST 대상 매출액이 2천만 달러 미만인 공급자는 GST 신고서를 분기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월별 신고서 제출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GST 대상 매출액이 2천만 달러 이상인 공급자는 GST 신고서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GST 등록 대상이 아닌 납세자는 연간 GST 신고서 제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GST 목적상 다양한 공급 형태

- 일부 공급품은 “GST-free”가 적용됩니다 (다른 GST 또는 VAT 제도에서는 영세율(zero-rated)이라고 합니다). GST-free인 공급품의 경우 공급자는 그 공급에 대해서 GST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GST-free 공급품

제작 시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지급한 GST 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input tax credit)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공급품에 GST-free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일정한 조건하에서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음).
 - 재화의 수출
 - 국제선 항공편 또는 선박을 이용한 여행
 - 국내선 항공 여행: 해외 여행의 일부로서 이용할 경우만 해당
 - 대부분의 건강, 교육 및 아동 보육 서비스
 - 대부분의 농수축산물
 - 물, 하수처리 및 배수 (sewerage and drainage)
- 다른 GST-free 공급품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운영중인 사업의 양도 (법률상으로는 “the supply of a going concern”으로 표현되어 있음)
 - 귀금속의 1차 공급 (the first supply of precious metals)
 - 호주 내 면세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급
 -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freehold(일종의 토지소유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의 이전
 - 호주 외부에서 소비할 특정 서비스의 공급
 -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농지매매
- 일부 공급품은 “input taxed”가 적용됩니다 (다른 GST 또는 VAT 제도에서는 면세(exempt)라고 합니다). 즉 공급자는 해당 공급품에 대해 GST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공급품 제작을 위해 취득한 물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금융서비스의 공급 (financial supplies)과 관련하여 특정한 종류의 매입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분적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면세 공급품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일정한 유형의 금융서비스(financial services)
 - 주택임대 혹은 주택(residential premises)의 공급. 다만, (과세 대상인) 새로운 주택의 공급은 제외
 - 먼저 영세율을 적용 받은 귀금속의 후속 공급
- 대가를 바라지 않는 공급품, 사업체를 통해서 제작되지 않았거나 호주와 관련이 없는 공급품은 일반적으로 GST 범위 밖(outside the scope of GST)으로 간주됩니다.
- GST 목적상 범위 밖으로 간주되는 공급품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배당금의 수령
 - GST 그룹 회원들간의 공급품 또는 미등록 GST 사업체들 간의 공급품
 - 선물 또는 기부.

부동산

- GST 등록 사업체가 freehold(일종의 토지소유권) 또는 기타 토지에 대한 권리를 매각할 경우 일반적으로 GST가 적용됩니다. 당사자들은 margin scheme 조항을 적용하여 공급에 대해 감액된 GST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공급이 적격이어야 하고 공급자와 수취자가 margin scheme 적용에 대하여 서면 합의를 해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 일반적 GST 규칙을 적용할 경우 GST 는 부동산의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하지만 margin scheme 을 적용하면 공급 마진(이윤)의 1/11 만 GST 로 납부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마진은 공급 가격(등록된 자의 판매 가격)이 취득 가격보다 추가하는 부분만큼의 금액을 말합니다. margin scheme 거래인 경우는 구매자가 마진에 대해 납부한 GST 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미등록 개인(unregistered private individual)이 다른 미등록 개인에게 주택(residential premises)을 매각하는 것은 GST 범위 밖입니다.

비거주자를 대행하는 거주자 대리인(Resident agents acting for non-residents)

- 비거주자가 거주자인 대리인을 통해서 수행하는 과세대상 공급에 대한 GST 는 일반적으로 비거주자가 아닌 거주자 대리인이 납부합니다. 이 규칙은 취득에 대한 GST 청구 및 수입 GST 납부/청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보험 공급(Supplies of insurance)

- 보험사의 보험증서 공급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입니다. GST 는 보험료(보험료에 부과되는 인지세는 제외)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생명보험은 면세 대상입니다. 수출 또는 개인 건강 보험 증서로 인정되는 보험 공급은 영세율(GST-free)이 적용됩니다.

GST 규정의 변경 예고

- 발표했지만 아직 입법화되지 않은 여러 과세 조치에 대한 호주 정부 확인 사항(2013.11.6 일 및 2013.12.14 일)의 일부로서 정부는 GST 법률 개정을 아래와 같이 추진한다는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 과다납부 GST 환급을 제한하는 Division 142의 도입
 - 불필요하게 호주의 GST 제도에 관여되는 비거주자를 수를 줄이기 위해 “호주와의 관련성”(connected with Australia) 규칙 변경
 - 계속 기업(going concerns)과 농장 공급품에 대한 GST-free 세제혜택을 reverse charge(매입자 납부) 방식으로 대체

개인소득세

Tax상 거주자의 의미

호주의 세법상 개인의 거주자로서 지위가 갖는 의미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자는 호주에서 발생한 소득 외에도 호주 외의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과 과세대상 자본이득에 대해서 호주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한된 범위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허용 됩니다).
- 개인소득세의 최고한계세율은 45%이고, 이것은 18 만 달러를 초과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2011.6.30 일에 종료되는 회계 연도의 경우 소득 18 만 달러까지 적용되는 세금은 54,550 달러입니다).
- Medicare 는 국민건강보험제도입니다. Medicare 에 대한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개인소득세 신고시 Medicare Levy 형태로 부가 징수 됩니다. 그 보험료율(levy)은 과세소득과 과세관청 보고 대상이 되는 부가급여 (reportable fringe benefits)를 합한 금액의 1.5%입니다. 고소득자로서 적절한 민간 병원보험(private hospital insurance)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Medicare 할증 보험료 1%, 즉 과세소득과 보고대상 부가급여 합계액의 1%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호주에서 일하는 특정 국가 출신의 외국인, 저소득층,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남세외무자에 대하여는 Medicare 보험료 징수가 면제됩니다.
- 호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inbound expatriate)로서 일시 거주자(temporary resident)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호주 국외에서 발생한 투자소득에 대하여는 호주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이들에 대한 자본이득과세는 세법상 규정되어 있는 일부 자산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 거주자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국외신탁이나 호주 거주자에 의하여 지배되는 해외법인에 대한 투자,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국외투자펀드 그리고 국외생명보험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형식적으로 배당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과세할 수 있는 발생주의 세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 일시 거주자(temporary residents)에게는 이러한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용자는 각 근로자를 대신해서 호주정부로부터 인가된 퇴직연금펀드에 일정한 금액을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특정 고위급 외국인 임원은 제외). 현재 그 금액은 급여의 9.25%인데, 기준 봉급의 상한(salary cap)은 2014년 6월 30일 현재 분기당 48,040 달러입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1일까지 그 납부액 비율을 12%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호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inbound expatriate)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면제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거주자인 개인이 세계 각지에서 벌어들인 근로소득은, 그 소득이 호주로 송금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일반적으로 호주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소득이 과세 대상일 경우 사용자는 종업원의 소득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호주 국세청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대상 근로소득에는 포함되는 항목에는 기본급 (base salary), 임금(wage), 수당(면세인 원격지근무수당(living-away-home allowances) 제외), 수수료(commissions), 임원의 보수 및 보너스, 종업원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한 이익 분배 금액(profit sharing payment) 등이 있습니다.

고용계약은 확정하기 전에 호주의 고용분야 변호사나 조세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주자 요건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보수체계(원격지근무수당 포함)를 만드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가급여세(Fringe benefit tax)

Fringe benefit tax(이하 "FBT"로 약칭)는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근로자 단체, 종전의 근로자 또는 장래의 근로자에게 현금 외의 형태로 지급하는 각종 부가급여 (non-cash benefits)에 적용되는 조세입니다.

FBT 과세대상이 되는 주요 분야는 근로자에게 지급 되는 차량, 종업원이 호주에서 근무할 때 발생하는 음식 숙박비 보조금 지급, 저리 또는 무이자 대부, 의료보험 등 사적 용도의 지출비에 대한 보상 등입니다.

부가급여(fringe benefits)에 세금은 종업원에게 과세하지 않습니다. 즉 이러한 부가급여에 대한 세금은 분리과세 형태로 부과하고, 최고 한계세율(highest marginal tax rate)을 적용하여 사용자에게 부과합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FBT 비용을 종업원에 대한 총 보상 패키지의 일부로 처리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FBT는 사용자에게 부과되며, 호주 회사 및 외국 회사(종업원이 호주에서 근무할 경우)가 지급하는 부가급여와 관련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업무배치(employment assignment) 및 전환배치 (relocation)와 관련된 부가급여에 대하여 다양한 FBT 면제대상 (exemption and concession)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격지근무수당(living away from home allowance)과 관련된 주요 면제 사항 중 하나를 2012.10.1일에 축소하였습니다.

순자본이득(Net capital gains)

1985년 9월 19일 후에 취득한 자산을 그 후에 처분 함으로써 발생하는 자본이득은 개인의 조세 부과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1999년 9월 21일부터는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순자본이득의 50%만 조세부과대상소득으로 되며, 특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완전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 거주자(foreign resident)와 임시거주자(temporary resident)는 일부 자산에 대한 순자본 이득에 대해서만 자본이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개인이 생애 처음으로 조세법상의 거주자(tax resident)로 되는 경우 자본이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자산의 평가시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개인의 경우, 주거목적의 주택처분 시에는 자본이득세를 적용 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위한 계획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임시거주자로 간주되지 않는 호주거주자는 세계 각지로부터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호주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해당 시 외국 납부 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주 거주자가 되기 전에 과세 대상 여부 및 투가 기회를 판단하기 위해 개인적 투자 및 기타 관련 사항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axation of Foreign Arrangements (TOFA)

TOFA에서는 세법상 외환차손익을 인식하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TOFA법령은 2003년 7월 1일 이후 설정 혹은 변경된 외화표시 은행여수신계좌와 관련하여 입출금에 적용됩니다.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TOFA 법령의 적용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거주자인 개인에 대해서는 TOFA 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주자가 되기 전에

호주 거주자가 될 생각이 있으신 분은 호주세법의 적용 및 향후 변경계획에 대해서 전문가로부터 구체적인 조언을 받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법

개요

호주에서 고용과 관련된 법적 기준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보통법
- 국가근로기준(National Employment Standards)과 industrial Award 및 Workplace agreements 등 근로조건에 관한 문서(industrial instruments) 등이 포함된 연방법 및 주법(statutory and regulatory framework)

보통법(The common law)

호주에서 보통법은 고용과 관련된 법적인 의무사항을 규율하는 중요한 법원(法源) 중의 하나입니다. 보통법상 당사자간의 법적 의무와 관련하여 가장 명확한 근거는 고용계약입니다. 고용계약은 그것이 서면계약인지 구두계약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고용관계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율합니다.

고용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될 필요는 없지만, 문서로 작성할 것을 권장합니다. 문서로 작성된 고용계약은 그 내용이 다양하나 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합니다:

- 고용 시작 시기 및 기간
- 보수
- 근로자의 역할 및 선임권(seniority)
- 고용관계 해지 방법
- 기타 특정 요건 - 비밀보장, 지적재산권, 고용기간 동안 또는 고용이 종료된 후 근로자의 행위에 관한 제한 등 포함

서면 고용 계약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그 내용에 당사자들의 관계를 효율적으로 기술하고 적용하고 측정하는 방법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고용관계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양 당사자간의 분쟁과 관련하여 최근의 법원 태도를 감안할 때, 고용계약을 문서로 작성해서 꾸준히 업데이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및 권리를 평가할 때 준수해야 할 절차를 명시한 직장 정책을 문서로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책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측에 구속력이 있는 의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연방법 및 주법(The statutory and regulatory framework)

지난 10년 동안 호주의 직장 관계 법률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대부분의 경우 민간 부문 및 연방 공공 부문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이제 연방 사업장 법률, 주로 Fair Work Act 2009 (FW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주 공공 부문(State public sector)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은 대부분 아직까지 주 사업장 법률(State workplace legislation)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연방법 개관

공정근로법 (Fair Work Act)

FA법에 근거한 제도의 핵심적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국최저임금(National Minimum Wage)의 도입 (2014 회계연도에 시급 16.37 달러)
- 법적인 최저 고용 조건을 규정한 새로운 10대 국가근로기준(National Employment Standards, 이하 "NES"로 약칭) (2010.1.1 일 발효)
- 새로운 Modern Awards 제도 (2010.1.1 일 발효) - 이전의 복잡한 다수의 연방 및 주 Awards 제도를 통합하여 대체함. Modern Awards(일종의 근로기준)는 modern awards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들을 위해 추가적인 최소 근로조건을 규정합니다.
- 전국의 직장 관계 제도를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체계와 이 제도 관리를 위한 새로운 기구 도입 - Fair Work Commission (FWC)와 Fair Work Ombudsman
- 단체 고용 협약 체결에 관한 새로운 제도 도입 - 지금은 enterprise agreements(단체 협약)이라고 함. 사용자, 종업원 및 노동조합은 새로운 단체협약을 협상할 때 선의의 단체교섭 규칙을 준수해야 하고, 단체교섭의 내용과 승인에 관한 새로운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modern award에 규정된 최소한의 권리와 비교할 때 단체 협약의 적용을 받는 각 종업원의 상황이 더 나아져야 한다고 요구하는 새로운 테스트(기준) (이하 "BOOT 테스트")가 있습니다.
- 노동조합이 업무현장에 들어가서 종업원 관련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폭 넓게 부여 - 여기에는 업무현장에 들어가서 종업원들과 토론할 권리 및 비조합원 종업원의 기록에 접근하기 위해 FWC에 신청할 권리 등이 포함됨
- 새로운 영업 양도(transfer of business rules) 규정: 아웃소싱, 인소싱(in-sourcing), 관계 회사 간 고용 양도 등 예전보다 더 폭 넓은 활동 범위를 규정함. 종업원 양도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은 새로운 사용자에게 승계되며, 그 후에는 다른 단체협약으로 대체될 때까지 계속 적용함. 또한 이전된 단체협약은 영업 양도 이후에 새로 고용되어 양도된 종업원들과 함께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신규 사용자의 종업원에게도 적용됨.
- 권리 범주를 새롭게 확대한 일반적 보호규정(general protections) - 여기에는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개인이 작업장 권리(workplace right)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차별 대우, 불법적 대우, 강요, 허위진술을 받지 않도록 할 권리, 불법적 해고 또는 허위 하도급 계약의 적용을 받지 않을 권리가 포함됨.
- 소기업 사용자를 위한 새로 제정된 소기업 공정 해고 규약(new small business fair dismissal code): 해당 사용자는 종업원 15인(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은 임시직은 제외) 미만을 고용하는 사용자와 그 관계회사임.

국가근로기준 (National Employment Standards)

10 NES가 규정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간 최대 근무 시간 - full-time 근로자의 주당 표준근로시간은 38시간으로 하고, 합리적인 추가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포함

2. 아래에 해당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탄력 근무 방식을 요구할 권리:

- 취학연령 이하의 자녀 또는 장애나 질병이 있는 사람을 보살피는 부모나 보호자
- 장애인 근로자
- 55세 이상 근로자
- 가정 폭력을 겪고 있는 근로자
- 가정 폭력 때문에 보살핌이나 지원이 필요한 직계 가족이나 가구 구성원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

3. 최고 12개월의 무급 출산휴가를 받을 권리 - 총 24개월까지 연장을 요구할 권리 포함 (사용자의 합리적 업무 요건에 따라 승인 여부 결정)

4. 유급 연차 휴가 4주 (교대 근로자의 경우 5주) - Award/단체협약 대상자가 아닌 근로자가 연차휴가 대신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음, 다만 최소 4주의 연차 휴가를 받을 권리는 지속적으로 유지됨.

5. 개인 휴가(personal/carer's leave, compassionate leave)를 받을 권리. 근로자에게는 1년 근무당 10일의 개인 유급휴가(personal/carer's leave)를 받을 권리를 부여. 또한 "해당 상황"(permissible occasion) 발생 시 2일의 무급 carer's leave 및 2일의 유급 compassionate leave (비정규직의 경우 무급)를 받을 권리 부여.

6. 지역사회 봉사 휴가(Community service leave) - 여기에는 10일의 유급 배심원 서비스 휴가, 무급 지역사회 봉사활동(특정 응급 관리 활동 포함) 휴가가 포함됨.

7. 새로운 국가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는 해당 Award, 단체협약 또는 주(State and Territory) 법률에 따라 부여되는 기존의 장기근속 휴가 권리를 계속 적용함 (아래 기타 법률 참조).

8. 유급 공휴일에 대한 권리 및 공휴일 근무에 관한 규칙.

9. 최소 해고 통지 기간 및 정리 해고 수당 (redundancy pay) - 모든 근로자는 근속 기간 및 연령에 따라 최소한 5주 전에 해고 통지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 (통지 대신에 금전으로 지불 가능). 또한 정리해고된 특정 근로자는 근무 기간에 따라 산출된 최소한의 퇴직금/정리해고 보상금(severance/redundancy payment)을 받을 권리가 있음. 소기업의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퇴직금/정리해고 보상금 지급 의무가 면제됨.

10. 공정 근무 관련 정보문서(Fair Work Information Statement) 요건 - 신규 채용 근로자에게 고용 후 이 문서를 최대한 신속히 제공해야 함. 이 문서에는 NES, modern awards, 계약서 작성,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 및 FWC의 역할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근로조건에 관한 문서(Industrial Instruments)

호주 근로자 대부분의 근로조건은 Award와 단체협약을 포함한 Industrial instruments에 의해서 규정됩니다.

Modern awards (일종의 근로기준)

2010.1.1일에 새로운 modern awards 제도가 개시되어 기존의 awards 제도를 대체합니다. 기존 제도 하에서는 다수의 Award(사용자 및 NAPSA's 직업별 연방 Award)가 있었지만, modern award의 수는 훨씬 적으며 이는 산업 또는 직종에 적용됩니다.

약 120개의 modern awards가 도입되어 기존 Award보다 광범위한 산업 및 직종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위 경영진, 공인 변호사, 회계사 및 인사분야 전문가 등 특정 직종은 일반적으로 modern award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일부 다루는 경우도 있음). 최소소득한도 (2014년 기준 129,300 달러. 매년 물가상승률 반영) 이상의 연봉을 받았거나 서면 보장을 받았을 경우 Award 해당 근로자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Modern awards는 최저 급료와 최소한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NES 권리에 추가된 내용으로서 초과근무 및 초과근무 수당, 기타 수당, 휴가비, 퇴직연금, 협의 절차, 대표성, 분쟁 해결, 퇴직금/정리해고 보상금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또한 modern awards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특정 상황에서 개인의 필요성에 맞게 modern award의 일부 허용 조항의 적용을 탄력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 개인별 근로 약정을 협상할 수 있는 유연성 조항(flexibility clause)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체협약 (Enterprise agreements)

위에서 언급한 대로 FW법에서는 성실한 교섭 및 단체협약의 내용과 승인에 관하여 새로운 요건을 도입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modern award의 해당 조항을 단체협약 제안 조건과 비교하는 BOOT test 도입
- "금지된 내용"(prohibited content) 개념의 삭제 - 해당 내용으로는 차별적 조건, 결론에 대한 벌칙 조항 및 조합 회원에 대한 지원 조항 등이 있음
- 단체협약에는 차별적 조건과 부당한 조건 등 "불법적 조건"이 포함되어서는 안 됨. 부당한 조건(objectionable term)은 일반적 보호 요건에 반하는 행위를 허용하거나 교섭 서비스 수수료(bargaining services fee)의 지급을 요구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 "탄력성 조건"(flexibility term)의 포함 - 즉 개별 근로자와 특정한 약정을 맺도록 허용(탄력적 근무 시간 또는 시간제 근무 약정 등), 근로자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직장 변동사항에 관하여 (근로자가 선택할 경우) 근로자의 대표자 입회하여 직원과 상담해야 하는 의무 등 포함.

Modern awards에는 NES에 규정된 법적 권리에 추가하여 최소한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초과근무 및 초과근무 수당, 기타 수당, 휴가비, 퇴직연금, 협의 절차, 대표성, 분쟁 해결, 퇴직금/정리해고 보상금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또한 modern awards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개인의 필요성에 맞게 modern award의 일부 허용 조항의 적용을 탄력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 개인별 근로 약정을 협상할 수 있는 유연성 조항(flexibility clause)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용자에 대한 이의제기(Claims against employers) 권리 (Entitlements)

사용자가 NES 또는 근로조건 문서(industrial instrument)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또는 Fair Work Ombudsman)는 FW법 위반에 대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용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및 이사 등 위반행위에 관여한 사람)에게 벌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해고 시 사용자는 FW법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해야 하며, 이 법률의 사용자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소한의 해고 통지 기간 준수 (근로자가 심각한 부당행위를 한 경우는 예외)
- 영업 양도인 경우 특정 권리와 근로조건 문서(industrial instruments)의 인정
- 진정한 잉여인력의 경우 정리해고 보상금 지급

FW법 외에도, 고용계약서나 근로조건 문서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인정해야 할 해고 관련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Unfair Dismissal)

FW법에 근거하여 근로자는 (“harsh, unjust or unreasonable” 해고로 간주되는 상황일 경우)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으며, 이는 FW법에 규정된 특정 조건과 면제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자(12개월 이상 정기적 체계적으로 고용된 임시직 근로자 포함)는 일반적으로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 부당해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6 개월의 최소 고용기간(minimum employment period) 동안 근무한 경우. 단, 해고 당시에 FW 법상 소기업 사용자(small business employer)에 해당될 경우 12 개월의 최소 고용기간 적용.
- 근로자가 industrial instrument 의 적용을 받거나 최고소득한도 (2014 년 기준 129,300 달러. 매년 물가상승률 반영) 미만의 연봉을 받는 경우.

소기업 공정 해고 규약(Small Business Fair Dismissal Code)은 소기업 사용자에게 적용되며, 이 규약에 근거한 해고일 경우 해당 소기업 사용자는 부당 해고 이의제기 시에 보호를 받습니다.

FWC가 근로자의 부당 사실을 발견할 경우, FWC는 근로자의 복지 또는 보상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상금은 아래 금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Doing business in Australia | An introductory guide

- 64,650 달러 (즉 2014 년 최대 소득 한도액 기준 26 주 분 급여, 매년 물가상승률 반영)
- 해고 직전 26 주 동안 근로자가 받을 권리가 있거나 받았던 보수 총액(둘 중 높은 금액).

불법 해고 (Unlawful termination)

FW 법은 불법으로 해고(부당해고와 다름)된 근로자의 구제방안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FW법에 금지된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없으며, 금지된 이유의 예로는 노조가입, 노조활동 참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일시적 결근 및 불법적 차별요소(인종, 피부색, 성, 나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결혼여부, 부양가족에 대한 책임, 임신, 종교) 등이 있습니다.

FW법은 현재 불법 해고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모든 종업원과 사용자(연방 제도에 해당되지 않는 자들도 포함)에게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보호 (General protections)

FW법의 일반적 보호 규정의 목적은 작업장 권리와 결사의 자유를 보호하고 직장의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다른 사람(종업원 등)이 작업장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작업장 권리를 행사하였거나 또는 권리 행사를 제안했다는 이유로 해당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작업장 권리”(Workplace rights)에는 매우 광범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modern award, 단체협약 또는 workplace law(노사관계법)에 의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서 workplace law에 근거하여 소송을 개시할 수 있거나 자신의 고용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작업장 권리를 보유한 것입니다.

“불리한 조치”(Adverse action)에는 특정인을 해고하거나 고용을 거절하는 행위, 그리고 차별하거나 고용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도록 하는 행위(예: 직급 강등)가 포함됩니다.

사용자는 다른 사람(종업원 등)이 합법적인 노사활동(예: 노동조합 가입 또는 참여)에 관여한다는 이유로 해당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되며, 그리고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잠시 결근한다는 이유로 해고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는 인종, 피부색, 성별, 성적 취향, 연령, 육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결혼 여부, 부양가족에 대한 책임, 임신, 종교, 정치적 견해, 출신국가, 사회적 출신 등을 이유로 종업원(또는 종업원 지원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해서도 안 됩니다.

계약위반 / 잘못된 해고의 주장 (Breach of contract/wrongful dismissal claims)

보통법(the Common law) 하에서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해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만일 계약위반이 아닌 경우 근로자는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주로 임원, 상급관리자 또는 고액연봉 근로자에게 한정됩니다.

차별금지 / 기회평등 주장 (Discrimination / equal opportunity claims)

자신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는 연방 또는 주의 노사관계 제도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또는 자기가 속해 있는 주의 심판원(tribunal)(예: New South Wales Anti-Discrimination Board)에 해당 연방, 주의 차별금지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 (Bullying)

2014.1.1일부터 종업원은 특정 법률에 근거하여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괴롭힘은 개인 또는 집단이 다른 근로자의 건강이나 안전에 지속적인 위험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4.1.1일부터는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는 종업원은 FWC에 괴롭힘 중지 명령을 내리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규

유급 육아휴가(Paid Parental Leave)

연방 유급 육아휴가 제도(Paid Parental Leave Scheme)는 2011.1.1일 이후에 출생한 또는 입양한 자녀를 둔 직장인 부모를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해당 종업원에게 최대 18주 분의 최저임금(National Minimum Wage)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신생아 또는 입양아에 대한 일차적 보호자로서 적격인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이 지급액은 정부가 사용자에게 지불하며, 사용자는 해당 종업원에게 지불합니다. 이 지급액은 연차휴가, 장기근속 휴가, 사용자의 유급 출산 휴가 이전에, 이후에 또는 동시에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2013년 9월에 새로운 연방 정부가 구성되었으며, 해당 종업원들에게 보다 많은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유급 출산 휴가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새로운 제도의 상세 내용과 개시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퇴직연금 (Superannuation)

퇴직연금은 일종의 강제저축인데,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이 등과 같은 다른 제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The Superannuation Guarantee(Administration) Act 1992 (Cth)에 따르면, 호주 전역에 걸쳐서 모든 사용자는 근로자를 위해 특정 비율의 퇴직 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 보증 수수료(superannuation guarantee charge, 퇴직연금 보증금 부족액 + 그 금액에 대한 이자 + 행정 수수료로 구성됨)를 ATO에 납부해야 합니다.

2013.7.1일부터 퇴직연금 비율이 종업원의 통상임금(ordinary time earnings) 9%에서 9.25%로 인상되며, 이는 퇴직연금 최대 분담금 기준(superannuation guarantee maximum contribution base; 2014 회계연도 현재 분기당 48,040 달러)의 적용을 받습니다. 종업원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연금 분담금을 수령할 퇴직연금 펀드 또는 은퇴 저축 계좌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Doing business in Australia | An introductory guide

장기근속 휴가(Long Service Leave)

호주의 많은 종업원들은 장기근속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는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한 종업원에 대한 보상책으로서 수 년 전에 도입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권리에 대하여 FWB 이전의 근로조건에 관한 문서(industrial instrument) 또는 주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정확한 권리 내용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10년 근속 시에 8.6주, 그 후 5년마다 4.3주의 휴가를 부여합니다.

NES는 아래 규정을 바탕으로 발생하는 장기근속휴가에 대한 기존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단체 협약 또는
- 해당 주(State / Territory)의 장기근속휴가 법률

직장내 건강 및 안전 (Work Health and Safety)

호주의 직업 건강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주(State and Territory)별로 정립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합된 직장내 건강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없지만, Western Australia와 Victoria를 제외한 연방 및 모든 주(States and Territories)에서 유사하게 “일원화된” 직업안전법률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법률은 근로자 및 그 사업장에 출입하는 사람과 관련해서 사용자에게 중요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의무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한 작업공간, 설비 및 재료 제공
- 작업 안전 시스템, 적절한 정보 제공 및 교육훈련, 지도, 감독의 실시
- 적절한 근무 환경 및 시설 제공.

그리고 사용자는 보건 및 안전상의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과 보건 및 안전 문제를 적시에 근로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회사시스템을 구비하고 이를 적절한 문서로써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사 및 고위 경영진도 건강 및 안전 문제에 관한 최신 지식을 습득 / 유지하고, 사용자의 사업과 관련된 위험 요인을 이해하고, 적절한 자원과 공정을 구비하고, 위험을 제거 또는 최소화하는 대응 조치를 취하고, 사용자의 건강 및 안전 의무 준수 프로세스를 이행할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실사”를 수행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기소 당할 수 있고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위반 시 벌금은 사용자(이사 및 사용자의 관리자 포함)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 외에도 작업장의 점유자, 제조자, 공장시설의 공급자, 자영업자 및 국가도 또한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법령에 따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의무를 부담합니다.

구체적인 법적 의무는 사용자나 그 밖의 관계인 또는 사업체가 위치한 주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산재보상 (Workers Compensation)

모든 호주 근로자(해외에서 근무하는 호주인 근로자 및 호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포함)는 산재보상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각 주는 산재보상에 관한 법령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사용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법령상 요구되는 보험급여의 범위
- 직무상 발생한 부상 및 질병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통보
- 사용자의 지속적인 준법 책임
- 산재근로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 산재근로자의 복귀 지원
- 재활정책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프라이버시 및 감시에 관한 법(Privacy and Surveillance laws)

The Privacy Act 1998(Cth)는 개인 정보와 관련된 법적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National Privacy Principles(이하 “NPPs”로 약칭)로 지칭됩니다. 단, 이러한 NPPs는 일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employee records(근로자의 과거, 현재 고용관련 개인정보 및 의료 정보)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Privacy Act에 대한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4년 3월부터는 보다 포괄적인 기준(Australian Privacy Principles)이 NPPs를 대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기록은 지속적으로 배제됩니다.

근로자 기록에 대한 예외 규정이 적용되려면 다양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예를 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기록을 사용하는 것은 고용 관계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 예외 규정은 외부계약자나 구직신청자 중 채용탈락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의 프라이버시나 감시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종합적인 연방법률은 없습니다. 하지만 New South Wales, Victoria, Western Australian 및 Northern Territory 법률에서는 작업장 감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New South Wales Workplace Surveillance Act 2005*, (NSW)가 가장 종합적인 작업장 관계 법률로서, 특정 공지 및 다른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모든 형태의 카메라 감시, 컴퓨터 감시, 직장에서의 tracking 감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NSW내 사업장 내에서 email 또는 인터넷 접근 봉쇄 조치(특히, 노조 웹사이트의 이메일과 관련해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별 금지(Anti Discrimination)

세부 분야별로 직접적인 차별(direct discrimination)이나 간접적인 차별(indirect discrimination)을 금지하는 다양한 연방법령 및 주법령이 있습니다. 관련되는 연방법령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Racial Discrimination Act 1975* (Cth)
- *Sex Discrimination Act 1984* (Cth)

-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Cth)
-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Act 1986* (Cth)
- *Age Discrimination Act 2004* (Cth).

각각의 주에서도 종합적인 차별금지 및 고용평등에 관한 법령을 가지고 있으며, 직접적인 차별과 간접적인 차별의 정의에 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적인 차별은 개인적인 특별한 속성을 이유로 특정인을 다른 사람 보다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인데, 개인적인 특별한 속성의 예로는 나이, 인종, 피부색, 혈통, 국적이나 인종, 이민자 지위, 성, 결혼 여부, 임신 또는 잠재적 임신가능성, 부양가족 책임, 장애, 위에서 언급된 속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과의 연관성(친인척인지 아닌지 불문) 등입니다.

간접적인 차별은 외견상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기준이나 조건 및 관행을 적용하기는 하지만, 특정한 속성을 가진 그룹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입니다.

차별금지 법령과 고용평등 법령은 모든 단계의 고용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한 고용단계에는 구직 희망자의 취업 및 충원, 누가 직장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것인지 여부, 어떤 종류의 훈련이 제공되는지, 고용의 조건과 편익, 누가 부서간 이동, 승진, 경비절감, 해고대상으로 선정될 것인지 등이 포함됩니다. 차별금지법령은 고용관계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재화와 용역의 공급, 교육, 숙박시설, 클럽, 협의회, 퇴직연금 등을 포함한 다른 분야에도 적용됩니다.

모든 차별금지법령은 피해자의 민원제기를 기반으로 합니다. 구제신청자는 먼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원을 접수한 행정기관은 조사절차를 개시하고 양 당사자 사이에서 조정이나 화해를 시도합니다. 만일 계속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심판원이나 법원이 심리를 개시하고, 그 이슈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심판원이나 법원은 사용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구제신청자에게 Award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배상 요구에 대해서 사용자는 상당한 금전적 배상을 지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에서 개략적으로 살펴본 차별금지 및 고용평등 법령에 추가해서, *Workplace Gender Equality Act 2012* (Cth)는 100명 이상의 종업원을 보유한 모든 민간부문 사용자로 하여금 Workplace Gender Equality Agency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용자는 표준 성 평등 지표(standardised gender equality indicators, GEI)를 기준으로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 내용에는 인력의 성별 구성, 해당 사용자의 의사결정 기구, 여성과 남성간 동등 보수, 근로 약정의 유연성, 성 평등 문제에 대한 사용자와 상담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적재산권

개요

호주는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을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재화나 용역의 권리 관계에 대해서는 보통법에 따라, 시장을 오도 또는 기망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법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경쟁 및 소비자법'(Competition and Consumer Act(Cth))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통법은 일정한 상황에서 비밀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와 영업기밀(trade secret)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표권 (Trade marks)

Trade Marks Act 1995 (Cth)는 상표의 등록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의 등록은 출원자가 지정한 상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람의 것과 식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이며, 갱신을 위한 등록료를 납부할 경우 10년씩 연장됩니다.

상표의 등록으로 그 상표권자는 관련 상품 및 용역에 관하여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조치할 권리를 갖습니다.

상표의 등록 없이도 상표의 소유자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으나,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을 경우 그 소유자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가 한층 쉬워집니다. 상표등록의 신청은 상표를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상표를 장래에 사용하려는 계획 혹은 의사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자의 경우 상표 등록일까지 실제로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호주는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가입국입니다. 따라서, 다른 협약 가입국에서 상표의 등록신청이 먼저 이루어진 상태에서 동일한 상표등록 신청을 호주에서 하는 경우 그 신청자는 우선권을 주장하여 다른 나라에서 등록신청이 있었던 그 날을 호주에서의 상표등록 신청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는 다른 국가에서의 상표권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호주에서 상표등록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작권 (Copyright)

호주에서의 저작권은 Copyright Act 1968 (Cth) (이하 "Copyright Act"로 약칭)에 의해서 보호됩니다. 호주에서는 저작권을 등록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저작권 보호는 창작문학작품, 창작예술품, 창작뮤지컬, 창작드라마에 관하여 이루어집니다. 저작권은 저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 동안 존속됩니다. 저작권법상 작품은 창작성만 인정되면(original) 충분합니다.

통상적인 예술작품(works)에 대한 보호와는 별도로, Copyright Act는 사진, 음향, 영상 및 공연자의 권리와 같은 분야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문학 및 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의 서명국입니다. 따라서, 베른협약에 서명한 국가에서 창작된 작품은 호주 내에서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의 저작권 관련 법령은 저작인격권(moral right)과 Electronic Right Management information(ERM) 및 기술적 보호장치와 같은 디지털권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역시 일반적으로 보호됩니다.

호주의 저작권 관련 법령은 고용기간 중에 근로자가 창작한 저작물은 그 사업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반면에,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계약자가 창출한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계약상대방이 아니라 독립된 계약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허권 (Patents)

호주에서의 특허권은 Patent Act 1990 (Cth)에 따라 부여되고, 특허신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자에게는 특허 받은 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와 특허 받은 발명을 타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20년 동안 부여합니다.

일반적으로 특허권은 이전 기술 수준에 비하여 신규성(novel), 진보성 및 유용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과거에 일반에 공개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호주는 2001년 7월에 종전의 소특허제도(petty patents)를 Innovation patents제도(한국의 경우 실용신안제도)로 대체 하였습니다. Innovation patent는 형식심사(formalities check)만 거치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진보성에 관한 기준이 아직 실질적으로 법원에 의해서 확립되지는 않았지만, 정규특허의 대상인 발명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Innovation patents 등록자 역시 권리의 침해행위가 인지되면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호주는 특허권의 국제등록을 위한 특허협력 조약(Patent Co-operation)에 가입한 국가입니다.

호주는 특허권의 국제등록을 위한 특허협력 조약(Patent Co-operation)에 가입한 국가입니다.

디자인 (Designs)

등록 디자인은 소유자를 위해 제품의 시각적 외관(visual appearance of a product)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최초 디자인 등록 기간은 5년이며 선택적으로 추가 5년에 대하여 등록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신법인 Design Act 2003 (Cth)은 디자인등록에 필요한 식별력(distinctiveness)의 수준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새로운 등록요건은 두 단계로 구성된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디자인 신청을 제출하기 전에 공개되었을 경우, 예를 들어 인터넷에 공개되었을 경우에는 그 디자인은 등록될 수 없습니다.

도메인명 (Domain names)

“.au” 도메인은 “.com.au”, “.edu.au” 및 “.org.au”와 같은 수 많은 하위 수준의 도메인으로 세분됩니다.

도메인명을 등록하면 등록자에게 등록기간 동안 해당 도메인명을 사용할 라이선스가 부여됩니다. 도메인명의 첫 등록은 2년간 유효하고, 추가로 등록비를 내고 2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갱신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 도메인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CANN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려면 컴퓨터에 주소 (이름 또는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컴퓨터가 서로 어디서 찾을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소는 고유해야 합니다. ICANN이 이러한 고유 식별자를 전세계적으로 조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ICANN은 1998년에 설립되었는데, 인터넷의 보안, 안전성 및 상호운용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전세계 사람들이 참여하는 비영리 파트너십입니다. ICANN은 경쟁을 촉진하며 인터넷의 고유 식별자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호주의 보통법에 따르면,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비공개 (in confidence)로 제공되거나 관련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신뢰관계(a particular relationship of confidence)가 형성되어 있을 경우, 보통법상 그 정보의 수령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될 의무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협정의 당사자는 각각 비밀유지 약정 또는 증서를 작성하거나 계약상의 목적으로 공개된 정보는 어떠한 것일지라도 비밀이 유지될 것을 그 계약의 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밀유지의무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 달리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도 있고, 해당 정보의 공개가 법적으로 강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주 프라이버시 보호법(Australia's privacy laws)에 따르면, 개인 인적 정보의 사용, 공개, 보관에 관하여 법령상 정해진 규칙이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법

경쟁 및 소비자법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Cth) (CCA)는 연방 법률로서 다음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자의 다양한 법적 권리와 구제방안
 - 결함이 있는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소비자
 - 왜곡된 재화나 용역의 품질을 믿고 구매한 소비자
- 기업의 약탈행위로부터 소비자 보호

CCA는 상거래 법인(a corporation in trade or commerce)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 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일 우려가 있는 행위. CCA에는 재화 또는 물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이러한 행위의 유형(specific types of conduct relating to false or misleading representation)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 모든 상황에서의 비양심적인 행위(unconscionable). 법원은 이를 판단 함에 있어서 여러 요소(예: 관련 당사자간 협상력)를 고려합니다.

또한 CCA는 호주 소비자법 (Australian Consumer Law, ACL)을 형성합니다. ACL은 소비자에 대한 재화 및 용역 공급 계약에 여러 가지 조건과 보증 내용을 시사합니다. 보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자는 판매 재화에 대한 적절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 재화는 공급자가 제공하는 설명서와 일치하는 것이다
- 재화는 판매하기에 적합한 품질을 가지고 있다
- 합리적 관점으로 판단할 때 공급자의 재화 및 용역은 소비자가 공급자에게 알린 (암시적 또는 명시적) 구매 목적에 적합한 것이다
- 건본품에 의한 판매의 경우 관련 재화는 건본품과 동일하다

이러한 조건과 보증(warranties)을 배제, 제한하거나 수정하는 어떠한 시도도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단, 공급된 재화나 용역이 개인차원의 소비 목적(personal, domestic or household use or consumption)으로 구입된 것이 아닌 경우, 이에 대한 공급자의 책임은 ACL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급자와 소비자는 결함이 있는 상품의 제조자나 수입자에 대하여 법적인 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ACL은 상품의 공급자가 지켜야 할 산업분야별 세부기준과 상품의 안전 및 정보제공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안전하지 않은 상품으로부터 일반대중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권한에는 안전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 일반 대중에게 미리 알리고, 리콜을 명령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소송 이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는 하지만, ACL 하에서 제기되는 소송과 관련해서는 일정기간이 경과할 경우 소송이 제한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ACL에 규정되어 있는 묵시적 조건이나 보증(implied conditions and warranties)과 관련하여 적용될 경우, 1980년 4월 10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채택된 상품의 국제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협약(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이 호주의 주법이나 ACL 조항보다 우선합니다.

현재 호주의 일반 소비자 법률은 동일하게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는 10여 개의 법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ACL과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Act 2001* (Cth)에 소비자 조항 형태로 된 두 개의 국가 법률, 공정거래 및 소비자 보호를 규정하는 다양한 주 법률, 그리고 재화의 판매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됩니다.

해당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Trade Practices Act의 소비자 조항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 보호 및 공정거래에 관한 단일 국가 법률
- 국가불공정계약조건법(national unfair contract terms law)
- 국가제품안전규제제도(national product safety regulatory system)
- 호주 소비자법(Australian Consumer Law, ACL) 수립
- 기존의 주 법률에 최선의 실행방안을 도입하기 위해 법 운용 개선하는 추가적 개혁

독점규제 및 경쟁에 관한 법률

'경쟁 및 소비자법'(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Cth)) (CCA)은 호주 내에서의 경쟁에 반하는 행위를 규제 및 금지하고, 시장지배력의 남용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쟁제한적 거래관행과 관련된 법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경우에는 최고 1,000만 달러,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직전 12 개월 동안 호주에 있는 회사 그룹 연간 매출액의 10%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되고, 개인의 경우에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50만 달러의 벌금, 이사 자격박탈 또는 심각한 카르텔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CCA 관련 정부내 집행부서는 Australian Consumer and Competition Commission (ACCC)인데, 이 위원회는 CCA 위반행위의 조사와 관련 하여 각종 정보나 문서 및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이 있습니다.

CCA하에서 특정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금지행위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경쟁업체들간에 담합하여 가격을 확정(price fixing) 혹은, 시장을 분할(market sharing)하는 행위
-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resale price maintenance)
- third line forcing(특정한 다른 사람의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조건으로 자기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
- exclusionary provisions (불매행위).

만일 조인트벤처 회사의 경우 가격을 확정(pricing fixing) 하거나 경쟁자를 배제하는 등의 독점적 조치 (exclusionary provisions)와 관련해서, 가격 확정(pricing fixing) 또는 독점적 조치(exclusionary provision)가 조인트벤처의 사업목적이라는 점 그리고 그 행위가 관련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으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고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third line forcing에 대한 예외도 존재하는데, 특정 다른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입한다는 조건하에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수도 있는데 이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그 다른 업체가 최초 공급자와 관련된 법인이어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

관련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거나 경쟁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있는 아래와 같은 행위는 CCA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는 특정한 지역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
- 다른 회사의 주식이나 자산을 인수하는 행위

일반적으로,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 협약 또는 양해사항도 법률상 금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AA 중 경쟁 제한적 거래관행(restrictive trade practices)에 관한 조문에 위반되는 행위라 할지라도 일정한 요건하에서 당사자가 그 행위를 ACCC에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환경법

연방정부 제도

호주 헌법은 연방정부에게 개발과 관련된 환경문제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별도로 부여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주정부가 대부분 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전통적으로 멸종위기 종 및 이동성 종, 세계유산, 랍사협약에 따라 관리되는 중요 습지, 핵 및 해양환경과 같은 국제협약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주제에 대해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권한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연방정부의 역할은 각 주와의 상호협약 및 헌법상 연방정부 관할권(corporations power under the Australian Constitution)을 적용하여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자원 분야에서 주정부들 사이에서 수자원 배분을 조정하는 입법,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재활용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입법, 수자원 기반시설의 향상을 위하여 연방정부의 자금을 배정하는 입법과 관련하여 연방정부가 꾸준히 관여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주정부들간의 전력 및 천연 가스 시장에 관한 국가차원의 협약을 도입하고, lifecycle management of packaging(National Packaging Covenant)을 위한 공통의 자발적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분야에서 연방정부는 National Greenhouse and Energy Reporting Act 2007 (Cth) (이하 "NGER Act"로 약칭)를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생산 및 소비 내역을 필수적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국가 차원의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호주는 *Energy Efficiency Opportunities Act 2006 (Cth)*에 근거하여 대규모 에너지 사용자들에 대한 필수 보고 요건도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전력소매회사들이 충분한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구매하도록 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에 대해 각 기업들이 보고하도록 입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연방 단계에서의 각종 조치에 추가해서, 각 주정부도 환경에 기초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NSW주의 경우 2003년부터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 하였습니다(주로 전력분야에 도입함). 연방정부가 배출권 거래 제도 또는 기타 탄소 부과금 조치를 도입하면 이러한 거래 제도와 기타 주 정부 차원의 정책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호주의 많은 주들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재생에너지 사용목표량을 가지고 있는데, 에너지 공급회사들은 의무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전기를 재생자원으로부터 생산하여야 합니다.

2007년 12월 3일에 당시 Kevin Rudd 호주 총리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비준서에 서명하였습니다. 교토의정서에 서명함에 따라 호주는 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량을 이행해야 합니다. 호주는 2012년까지 1990년 배출량의 108%로 유지해야 하고, 2050년까지 2000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60%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또한 202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00년 수준에서 5% 저감한다는 중기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정부 제도

주정부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규제와 관리책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오염(pollution)
- 오염된 토지(contaminated land)
- 천연자원(natural resources)
-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
- 토지사용과 개발(land use and development)

법령상의 의무사항은 주 관할지역별로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산업에서 오염물질을 대기나 물 및 토지로 배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이 허가 받은 시스템(licensing system)에 의해서 통제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소음과 유해화학물질의 운송, 보관 및 사용에 대해서는 여러 규제사항들이 있습니다.

주 당국은 오염된 지역에 대하여 조사와 복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 위반이 발생할 경우 회사(일부의 경우 지주회사 포함), 이사, 근로자, 하청업자(contractor)에게 중한 형사처벌이나 민사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반을 야기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우지만 특정 위반의 경우 과실을 입증하지 않고서도 토지 소유자가 유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각 주는 매우 높은 생물학적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부지를 보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각 주에는 national park 시스템이 있습니다.

사유지라 하더라도 자연상태에 있는 대부분의 동식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특정한 농업활동을 위해서 식물을 제거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의 예외사항은 각 주마다, 그리고 토지의 보존가치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주민 유적지를 허가 없이 훼손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각 주 법령은 또한 고도의 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렵인 정착유적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내 거주지 개발, 빌딩 건축, 쓰레기 처리에 대한 규제는 통상 지방정부(local government)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주법에 따라 선출직으로 구성 됩니다. 주정부는 주요 공공 및 민간 사회기반시설 (infrastructure) 개발-에너지, 수자원, 광산, 도로 및 철도 프로젝트 포함-에 관한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의 통제와 소유 (Control and ownership of infrastructure)

연방정부는 국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highway)에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정부와 지방정부(local government)는 도로망의 규제, 유지 및 개발에 관해서 1차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각 주의 수도지역(state capital cities)에는 민간에서 소유하고 있거나 운영하고 하고 있는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호주 철도망은 주정부 소유입니다. 일부 철로는 연방정부나 민간회사 소유입니다.

각 주의 해안도시(the State's maritime capital)에 있는 항만시설은 각 주의 규제를 받습니다.

공항은 연방정부의 법령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지만, 그 운영은 대체로 민간회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수자원에 대한 규제와 댐, 파이프라인, 운하와 같은 기반시설의 창출에 관한 규제는 주로 주정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Murray Darling Basin에 대해서는 연방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물을 강이나 지하수맥으로부터 끌어 쓰기 위해서는 대부분 면허가 필요합니다.

도시지역의 물 공급 및 하수 기반시설은 주법령에 의해서 규제되고, 대부분 주정부 소유입니다. 이러한 분야의 경우 민간투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수질 개선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전기와 가스의 생산 및 보급은 주정부와 민간회사가 공동으로 투자한 사업체에 의해서 소유되고 관리됩니다. 이러한 분야의 규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PwC 소개

개요

PwC Australia는 호주의 특정 주에서 규제를 받고 있는 Multi-Disciplinary Partnership입니다.

PwC는 고객의 필요성과 경쟁이 심화되는 기업 환경에 직접 대응하여 개발된 컨설팅 서비스를 새로운 접근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오늘날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 및 국제 세무, 법률 문제에 관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다국적 고객들의 필요성을 훌륭히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여타 전문 서비스 업체와 다른 점은 PwC 내의 전문가 그룹과 함께 고객들에게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와 법률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당사의 종합적 접근법을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비스 전달 방식을 통해 고객의 폭넓은 비즈니스 이슈에 대하여 독특한 관점을 형성함으로써 고객에게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PwC 법무팀은 다른 전문가 그룹과 협력하여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여러분의 비즈니스 이슈에 대하여 종합적인 조언과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고객과 함께 하는 PwC

최고의 실용적 법률 솔루션은 고객의 상황을 폭넓게 이해함으로써 도출된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들은 비즈니스에 적합한 용어를 구사하며, 여러분의 목표를 이해하고 상업적 용어로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분과 협력합니다. 당사는 전문가 팀을 동원하여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조언자로서 고객과 함께 일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거래를 구성하여 시종일관 프로젝트 관리를 하며, 궁극적인 목표는 고객의 비즈니스를 혁신하고 고객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금융, 정보 기술, 제약, 통신, 엔터테인먼트, 에너지, 광업, 도소매업 모든 산업분야의 고객들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당사는 모든 고객들에게 각자의 사업 요구사항에 맞는 산업별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 관리

고객관리는 고객관리 담당 파트너에 의하여 이뤄지고 있으며, 각 파트너들은 지역 및 국제적 차원에서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양질의 상업적 법률 솔루션을 제공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고객관리 담당 파트너는 해당 고객과 산업에 대한 심층적 지식을 보유한 법률가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의 고객 관계는 신뢰, 의사소통 및 전달 고객 서비스를 바탕으로 형성됩니다.

국제 조세 및 법률 서비스

당사는 고객의 복잡한 비즈니스 이슈에 대응하는 맞춤형 어드바이스를 제공합니다.

법률 서비스 제공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 및 상거래, 고용법, 부동산

기업 및 상거래

Corporate and Commercial Team은 상업적 맥락에서 전문 법률 서비스와 조언을 제공합니다. 당사의 고객들은 다양한 산업분야에 있는 일반 기업, 공기업, 비영리 조직 및 고액 자산을 보유한 개인도 포함됩니다. 저희는 결과를 중시하는 팀으로서 우리의 실용적 상업적 접근법과 일관된 전문성은 고객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의 목표는 고객의 필요성과 기대치를 조율하는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Corporate and Commercial Team의 전문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수 및 합병 그리고 매각분할
- 그룹 구조조정
- 사모펀드 관련 업무
- 조인트벤처, 파트너쉽 설립 및 변경
- 상장, 회사채 공모 및 사모업무
- 기업지배구조 변경
- 회사법 및 기타 법률 요구사항

고용

Employment Law team은 고용법 및 노동법 관련 전문분야에 대하여 다양한 산업의 기업 고객, 정부 기관 및 법률 당국에 법률적, 전략적 어드바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고객이 고용관계의 모든 단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법률요건을 준수하도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mployment Law team은 고용 문제, 직장 개혁과 전략, 노사분쟁 발생 시 이를 관리하도록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 팀은 민감한 사안을 최고의 전문성으로 처리한다는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의 통합 비즈니스 솔루션을 통해서 PwC내의 전문 인사상담팀과 협력하여 고객들에게 인사 관련 문제에 대해 종합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

Real Estate team은 부동산 펀드 조성, 부동산 자본 거래, 자산 구조, 모기지 증권, 부동산 개발, 소유 구조, 토지사의 사용 및 부동산 관리 등에 관하여 투자자, 개발자, 정부당국, 펀드 매니저 및 기관에게 법률 서비스 및 거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거용, 상업용, 산업용 부동산과 대규모의 공공 및 민간 건물과 기반시설 프로젝트 등 모든 종류의 자산이 포함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부동산 비즈니스에서부터 펀드 조성, 합병, 조인트벤처, 부동산 자산의 취득, 개발, 권리 관계, 리스, 처분에 이르기까지 고객들에게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pwc.com.au

John Cannings

Partner
Corporate & Commercial
Phone: +61 2 8266 6410
Fax: +61 2 8286 6410
john.cannings@au.pwc.com

Nick Brown

Partner
Corporate & Commercial
Phone: +61 38603 0291
Fax: +61 3 86132876
nick.brown@au.pwc.com

Kathleen Ward

Director
Corporate & Commercial
Phone: +61 2 8266 6540
Fax: +61 2 8286 6540
kathleen.ward@au.pwc.com

Susan Price

Director
Employment Law
Phone: +61 2 8266 2175
Fax: +61 2 8286 2175
susan.price@au.pwc.com

Korean Service Desk

Rod Dring

Partner
Phone: +61 2 8266 7865
Fax: +61 2 8286 7865
rod.dring@au.pwc.com

Andrew Wheeler

Partner
Corporate & Commercial
Phone: +61 2 8266 6401
Fax: +61 2 8286 6401
andrew.wheeler@au.pwc.com

Steven Maarbani

Director
Corporate & Commercial
Phone: +61 2 8266 6834
Fax: +61 2 8286 6834
steven.maarbani@au.pwc.com

Simon Lewis

Director
Corporate & Commercial
Phone: +61 2 8266 2161
Fax: +61 2 8286 2161
simon.lewis@au.pwc.com

Danny Kim (대니 김)

Director
Phone: +61 2 8266 5724
Fax: +61 2 8286 5724
danny.kim@au.pwc.com

© 2014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Australia member firm,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